

ISSN 2093-5048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

# 2022 연차보고서

**KDIC**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예금보험공사**

# | 발간사 |



2022년은 팬데믹의 충격이 크게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연쇄적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매우 불안정하였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증대되는 상황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금융시장의 위기 전염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여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4월에는 대형금융회사 10곳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만일의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부실금융회사를 질서 있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4월과 5월, 공사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4.5%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추가 매각하여 우리금융지주의 사실상 완전 민영화를 달성하였고, 적기매각을 통해 지원자금 대비 약 1,000억원을 초과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7,574억원을 국채로 일시에 상환받아 수협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당초 계획 대비 6년이나 앞서 사실상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보증보험의 중장기 매각 로드맵을 마련하여 부실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자금회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서도 큰 진전을 보았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프로그램이 2021년 7월 시행 이후 금년말까지 60억원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였으며, 2023년부터 동 프로그램 적용대상 거래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공공기관의 ESG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ESG경영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ESG경영을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탄소중립 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시키고,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사는 부실발생 이후의 사후 정리 위주에서 사전적·예방적 부실방지 중심으로의 역할 전환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시장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본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대응하여 나갈 것입니다.

본 연차보고서는 예금보험공사가 2022년 수행한 주요 업무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국민들이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및 성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유재훈

유재훈

# | 차 례 |

<b>제1장</b>	<b>주요 추진 업무</b> .....	11
<b>제2장</b>	<b>조직 운영</b> .....	25
	제1절 조직 구성 .....	26
	제2절 조직 관리 .....	31
	제3절 ESG경영 .....	43
	제4절 커뮤니케이션 .....	56
<b>제3장</b>	<b>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b> .....	67
	제1절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	68
	제2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	71
	제3절 착오송금 반환지원 .....	72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 .....	76
<b>제4장</b>	<b>금융회사 리스크 관리</b> .....	81
	제1절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상시 감시 .....	82
	제2절 차등보험료율제도 운영 .....	87
	제3절 부실정리계획 수립 및 시행 .....	89

<b>제5장</b>	<b>부실금융회사 및 파산재단 관리</b> .....	93
	제1절 출자금융회사 지분 매각.....	94
	제2절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 운영.....	97
<b>제6장</b>	<b>부실책임 추궁</b> .....	105
	제1절 부실금융회사.....	106
	제2절 부실채무기업.....	109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111
	제4절 제도 개선.....	114
<b>제7장</b>	<b>기금 관리 및 결산</b> .....	117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18
	제2절 예금보험기금.....	126
	제3절 결산.....	136
<b>부 록</b>		
	1. 예금보험제도 개요.....	148
	2. 통 계.....	152

# | 차례 |

## 표 차례

<표 I - 1>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및 공사 단독조사 실적	16
<표 I - 2> 공사 보유 주요 지분 현황	21
<표 I - 3>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지원 및 조달 현황	22
<표 II - 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26
<표 II - 2>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27
<표 II - 3> 임원	28
<표 II - 4> 2022년 이사회 구성 변동사항	29
<표 II - 5> 인원 현황	30
<표 II - 6>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	33
<표 II - 7> 공사 주요 조직문화 프로그램	35
<표 II - 8> 차세대 IT시스템 구축사업	40
<표 II - 9> 2022년 정보화 주요 대외평가 실적	41
<표 II - 10>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협업사업 추진 내역	45
<표 II - 11> 2022년 주요 사회공헌활동 내역	49
<표 II - 12> 비대면 생활금융교육 현황	51
<표 II - 13> 연도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현황	51
<표 II - 14> 윤리경영 추진 전략 체계도	55
<표 II - 15>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콘텐츠 제작	56
<표 II - 16>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57
<표 II - 17> 2022년 공사의 주요 IADI 활동 내역	58
<표 II - 18> 2022년 주요 연구 현황	63
<표 II - 19> 2022년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 주제	64
<표 II - 20> 2022년 정책심포지엄 주요 발표 내용	65

<표 II-21> 2022년 게재 논문	66
<표 III-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현황	74
<표 III-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반환 현황	74
<표 III-3>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전후 비교	75
<표 III-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홍보 자료	75
<표 III-5> 사모운용사 청산 업무 현황	78
<표 III-6>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련 국제기구 권고사항	78
<표 IV-1> 2022년 「금융리스크리뷰」주요 내용	86
<표 IV-2> 차등평가의 구분	87
<표 IV-3> 등급별 적용 차등보험료율	88
<표 V-1> 매각로드맵 주요 내용	96
<표 V-2> 저축은행 파산재단 주요자산 유형별 현황	98
<표 V-3> 파산재단 주요자산 유형별 회수 실적	101
<표 V-4> 채무조정 제도 개선 주요 내용	102
<표 V-5>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103
<표 V-6> 2022년 중 케이알앤씨(KR&C) 인수자산	104
<표 V-7> 케이알앤씨(KR&C) 보유자산(잔액)	104
<표 VI-1> 부실금융회사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 현황	107
<표 VI-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투입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108
<표 VI-3> 예금보험기금 투입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109
<표 VI-4> 부실채무기업 관련 심의 현황	110
<표 VI-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	110
<표 VI-6> 국내재산 회수 현황	111

# | 차 례 |

<표Ⅵ- 7> 해외재산 회수 현황	113
<표Ⅵ- 8> 제척·회피·기피제도 비교	115
<표Ⅶ- 1> 금융권역별 특별기여금요율	118
<표Ⅶ- 2> 금융권역별 특별기여금 수입	119
<표Ⅶ- 3>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120
<표Ⅶ- 4> 상환기금의 회수(2022년)	124
<표Ⅶ- 5>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125
<표Ⅶ- 6>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율	126
<표Ⅶ- 7> 연도별·계정별 예금보험료 수입	127
<표Ⅶ- 8>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129
<표Ⅶ- 9>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발행 및 상환	130
<표Ⅶ-10> 단기사채 발행 및 상환	131
<표Ⅶ-11> 예금보험기금 차입 및 상환	132
<표Ⅶ-12>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133
<표Ⅶ-13> 특별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134
<표Ⅶ-14>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22년 및 누계)	135
<표Ⅶ-15>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135
<표Ⅶ-16> 요약 재무상태표(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	141
<표Ⅶ-17>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 통합)	142
<표Ⅶ-18> 요약 재정상태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44
<표Ⅶ-19> 요약 재정운영표(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45

## 그림 차례

<그림 I - 1> 예금보험기금 계정 체계 및 수입 지출 구조	22
<그림 II - 1> 조직도	30
<그림 II - 2> KDIC 전략체계도	32
<그림 II - 3> 새로운 비전과 의미	32
<그림 II - 4> KDIC 성과관리체계도	37
<그림 II - 5> ESG 전략 체계	43
<그림 II - 6> 연구성과물 홍보영상	66
<그림 III -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73
<그림 III - 2> 신문광고, SNS 홍보	79
<그림 IV - 1>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 개요	89
<그림 V - 1> 자산유형별 관리형태	99
<그림 V - 2> 4단계 자산 회수관리 체계	99
<그림 V - 3> 케이알앤씨(KR&C)의 업무	104
<그림 VI - 1> 부실책임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107
<그림 VI - 2> 국내재산조사 업무흐름도	112

# | 차례 |

## 사진 차례

<사진Ⅱ-1> 탄소중립 실천 및 지역발전 기여.....	46
<사진Ⅱ-2> 2022년 PF사업장 등 공익활용 .....	48
<사진Ⅱ-3> 사회취약계층 후원 실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	49
<사진Ⅱ-4> 경영진의 안전활동 참여.....	52
<사진Ⅱ-5> 경영진 특강 .....	53
<사진Ⅱ-6> 안전교육 활동 .....	53
<사진Ⅱ-7> IFIGS 국제컨퍼런스 및 제9차 연차총회 .....	60
<사진Ⅱ-8> 2022년 제8회 「KDIC Global Training Program」개최.....	61
<사진Ⅱ-9> 2022년 정책심포지엄 .....	65
<사진Ⅲ-1>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관련 정책세미나.....	70
<사진Ⅴ-1> 2022년 주요 매각 자산 .....	101



# 제1장

## 주요 추진 업무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2022년 공사는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금융환경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 강화, 금융 소비자 보호 확대,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 혁신을 적극 수행하였다.

우선, 금융시장 안정 강화를 위하여 선제적 자금지원제도(금융안정계정 설치)의 도입을 본격 추진하였다. 선제적 자금지원제도는 금융시장·제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을 위한 제도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022년 중 금융위의 입법예고(2022년 8월~10월)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되었다.

효율적 자금 회수를 위하여 2022년 우리금융지주 지분 중 4.51%를 블록세일로 매각하여 4,981억원을 회수하고, 수협중앙회의 미상환된 공적자금 7,574억원을 2022년 9월 국채로 일시에 회수하였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의 청산시점(2027년말) 도래를 고려하여 공자위 의결을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중장기 매각 로드맵을 마련 하였다.

사전적 부실예방을 위해 금융회사 경영정보를 입수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리스크 감시모형을 활용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 또는 공사 단독조사를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공동검사 총 11회, 단독조사 1회를 실시하였다.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하여 예보제도의 실효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경제 규모 등 거시경제 상황 고려 시 적정 보호한도, 예금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목표기금 수준, 목표기금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보험료율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2023년 8월까지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1년 시행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에 따라 2022년 4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고, 2022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가 동 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공사는 매년 완성도 높은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5,043건, 60억원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는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2022년 12월 19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지원대상 금액을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상환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무이자 특별상환유예를 1년 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게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자영업자 컨설팅을 실시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금융정보 소외 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2022년 중 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총 1,173회, 30,393명에게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융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ESG경영 강화 등 조직혁신을 위하여 전년도에 구축한 ESG경영 인프라를 토대로 실질적인 세부과제를 마련함으로써 ESG 실천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니즈에 부합하는 후원을 전개하고, 서울시설공단과 新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계천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등 상생·협력 가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추어, 2022년 4월 「예금보험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신고·제출 의무 관련 운영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사 업무 특성 등을 반영하여 윤리경영 추진계획 및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였다.

예금보험제도 대국민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세대 IT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22년에는 민원응대 AI 챗봇 서비스와 VR 공매정보서비스 개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2022년 6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신청 및 예금보험금 지급신청 등 대국민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고자 IT 인프라를 신규 구축 중이다. 차세대 IT시스템은 테스트 단계 등을 거쳐 2023년말 오픈할 예정이다.

## 선제적 위기대응 강화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

2022년에 공사는 금융시장·제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의 금융회사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을 통해 위기전염을 차단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제도(금융안정계정 설치)의 도입을 본격 추진하였다. 선제적 자금지원제도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미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에서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며, 공사가 도입 중인 '금융안정계정'은 업계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운영되는 상시적 금융시장 안정 제도이다. 2022년 중 공사는 대내외 주요 협의체 및 유관기관 논의, 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도입방안을 정교화하였으며, 금융 위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2년 8월 31일~10월 11일)를 통해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후 2022년 12월 20일 금융위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2월말 국회에 최종 제출되었다.

2021년 6월 30일, 공사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제화를 추진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제도가 최초 시행되었다. 공사는 동 제도 도입에 따라 2022년 4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대형금융회사(SIFI)\*'라 한다.) 10개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다. 2022년 6월 22일, 금융위원회는 부실정리계획이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동 계획을 최종 승인 하였다. 공사는 매년 완성도 높은 부실정리계획 수립을 통해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가 매년 선정하며 2023년도 기준 KB·농협·신한·우리·하나 금융지주 및 은행을 SIFI로 선정(2022년 7월)

아울러, 공사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보제도 전반에 대한 준비를 추진 중에 있다. 경제·금융환경 및 제도 변화를 고려한 적정 보호한도·목표기금 규모·예금 보험료율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각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당국·금융 업권·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주요 검토과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8월까지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최근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으로 금융 거래 편의성이 제고된 반면, 송금인의 실수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자금이 송금되는 착오송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제도 시행 후 공사는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언론·SNS, TV광고 등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활동과 금융회사 직원 대상 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챗봇 서비스 구축 및 시스템 이용 시간 확대 등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여 제도 이용자 확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2년 12월말까지 총 16,759건(239억원)의 착오송금 반환신청이 접수되어, 심사 결과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7,629건(102억원)에 대하여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중 5,043건(60억원)의 착오송금 액을 회수하여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는 등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한편, 비대면 거래는 확산되고 그 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여 공사는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에, 2022년 12월 19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지원대상 금액을 '5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향후 공사는 지원대상 확대 안내 등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안내 지속 및 방문신청 이외에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보완하는 등 착오송금인의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사는 금융소비자가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예금보험 여부 및 보호한도를 홍보물 등에 표시하고,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금보험관계를 설명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는 표시·설명·확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사는 이러한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상품의 보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홈페이지·모바일앱 계좌조회 화면 등에 예금보호 여부 표시 의무화를 시행하였다.

금융정보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실시 중인 생활금융교육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기에 맞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하였다. 이를 통해 2022년 중 노인·장애인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총 1,173회, 30,393명에게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의 금융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및 일상회복 전환기에 맞추어 방역점검 간소화, 참관평가, 현장점검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총 907회의 대면교육을 실시하였고, 온라인 콘텐츠 신규제작 및 고객니즈를 반영한 비대면교육 활성화로 총 266회의 비대면교육을 실시하였다.

##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상시 감시

공사는 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스크 상시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선, 부실징후를 사전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정보를 입수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내부 리스크 감시모형을 활용하여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부실위험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요인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또는 공사 단독조사 등을 통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2022년에는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총 11회, 공사 단독조사를 1회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On·Off-site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1>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및 공사 단독조사 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공동검사	8개사	12개사	7개사	12개사	11개사
단독조사	3개사	1개사	-	1개사	1개사

한편,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리스크에 대한 변별력을 강화하고 부보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건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인부합적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평가 지표를 재점검하고 평가등급을 세분화 하는 등 제도를 발전 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출자금융회사 관리

공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취득한 주식(우리금융지주, 수협은행, 서울보증보험 등)을 매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2021년에 희망수량경쟁입찰 성공으로 공사의 보유 지분율이 5.8%로 축소되고 공사가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사실상 완전민영화가 달성되었으며, 2022년에는 잔여지분 매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2022년 2월과 5월에 블록세일로 4.51%를 매각하여 4,981억원을 추가로 회수하였다. 주가 상승기에 매각 시기를 적기에 포착하여 2차례 블록세일 모두 이전 매각가 이상으로 매각을 성사시켜 공적자금 지원액(12.7조원) 대비 1,009억원을 초과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협중앙회는 그간 수협은행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해 왔으나 미상환된 공적자금 7,574억원을 2022년 9월 국채로 일시에 상환하여 사실상 공적자금 회수가 완료되었다. 이를 통해, 공사는 기존 배당금 회수 방식 보다 확실한 현금흐름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수기간도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길 수 있었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본연의 기능인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협은행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해지로 경영자율성이 제고되었다.

서울보증보험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시점(2027년말) 도래, 건조한 경영실적 등 매각여건의 성숙을 고려하여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의 공자위 의결을 통해 중장기 매각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그간 보증보험시장 개방 관련 정책의 미확정에 따라 추진이 어려웠으나, 개방 전이라도 추진 가능한 매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다시 한 번 시장에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 파산재단 자산 매각

공사는 PF사업장, 주식, 미술품, 해외자산 등 파산재단에서 보유한 주요자산 유형별로 외부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매각방안을 마련하고, PF사업장의 경우 권리관계 및 매각장애사유 분석 등을 통해 채권매각, M&A 등 다양한 맞춤형 매각방안을 활용하였고, 미술품 등의 경우 전문옥션사와 협력하여 국내 또는 해외 경매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산회수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매각방안 등을 사전 심의하고, 장기간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매각장애 사유별 법률쟁점 검토 및 처리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2022년에는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PF사업장의 매수세 감소에 따라 기존 단순 공·경매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공탁금 재산정, 대위변제 등 회수방식을 다각화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회수를 추진하였다.

2022년의 대표적 자산 매각사례로는 울산 울주군 굴화리 아파트신축사업 및 용인 이동면 송전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울산 아파트신축사업에서는 기존의 배당안보다 6.4억원 상향된 109.4억원의 공탁금을 회수하였고, 용인 사례에서는 파산재단 대출액 422억원 대비 127% 초과한 535억원을 최종 회수하였다.

한편, 공사는 파산재단의 해외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캄코시티 채권의 회수를 통한 피해 예금자 구제를 위해 국회, 정부, 검찰 등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관련 TF 및 워킹그룹 회의 개최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캄코시티 부동산 현황 관련 일부 자료를 제공받아 그간 확인할 수 없었던 캄코시티 부동산의 주요 현황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2022년 9월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 공사 사장 간 면담을 실시하여 캄코시티와 관련한 한·캄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 11월 한·캄 정부 간 공식 합의를 통해 「한·캄보디아 캄코시티 정보공유 TF」의 존속기간을 2년간 연장하였다. 이후 공사는 2022년 12월 한·캄 TF의 캄보디아측 대표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사무총장과 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 본부장간 면담을 실시하여 향후 캄코시티와 관련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파산재단 운영

공사는 2011년~2013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한 30개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총 36개 금융회사 파산재단의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며, 파산재단의 보유자산을 매각하여 2022년 중 2,667억원을 파산배당금으로 회수하였다.

공사는 파산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운영경비 절감 등의 성과가 파산배당 극대화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운영효율이 낮은 파산재단의 종결추진, 소규모 파산재단의 통·폐합 및 파산관재인 겸직 확대 등을 통해 자산감소 추세에 맞추어 적정수준의 인력과 규모로 운영되도록 하고, 업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업무규정 및 기준을 재정비하였으며, 소송 등 법률업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파산관재 업무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자산매각 등 환가과정에서 공정·투명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파산관재인 및 업무보조인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 교육, 파산재단 업무 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공사와 파산재단 간 안전·보건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시설 현장 점검, 안전보건 자율점검 및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파산채권자 보호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였다.

또한,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파산재단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상환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무이자 특별상환유예를 1년 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게 최대 90% 감면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컨설팅을 실시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 동참하였다.

## 부실책임 추궁

공사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조계·학계·금융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실책임 여부를 심의·확정하고 있다.

공사는 부실책임심의 이후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정보 및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등 파산재단의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발견할 경우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22년말까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9,013명에 대해 1조 8,1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702명에 대해 4,6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관리

공사는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2년말 현재 공사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상환해야 할 82.4조원의 부채를 전액 상환 완료(2021년 8월) 하였으며, 2022년에는 잔여재산 2.4조원(전년대비 1.15조원 증가)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였다.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청산(2027년말) 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2020년 12월)

한편, 공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부실금융회사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지분매각이나 배당 등의 방법으로 회수하고 있다. 2022년에는 우리금융지주 지분 4.51%를 매각하여 4,981억원을 회수하였고, 수협

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우선주는 교환거래를 통해 전량 매각하여 공정가치 6,362억원의 국채를 수령하였으며 배당 극대화 노력으로 총 2,481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 우리금융지주 331억원, 서울보증보험 2,150억원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매입, 인수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의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로부터의 대출금 이자 수령 등을 통해 396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1-2> 공사 보유 주요 지분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액	회수액 <sup>1)</sup>	잔여지분 평가액 <sup>2)</sup>	공사 지분율	
공사	우리금융지주 (舊우리은행)	127,664	128,672	1,081	1.29%
	한화생명보험	35,500	25,071	2,406	10.00%
	서울보증보험	102,500	43,484	30,463	93.85%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11,581	4,007	-	-
합 계	277,244	201,234	33,950	-	

주 : 1) 지분매각, 배당금, 상환우선주 상환 등을 포함한 현금 수령액 기준(국채수령액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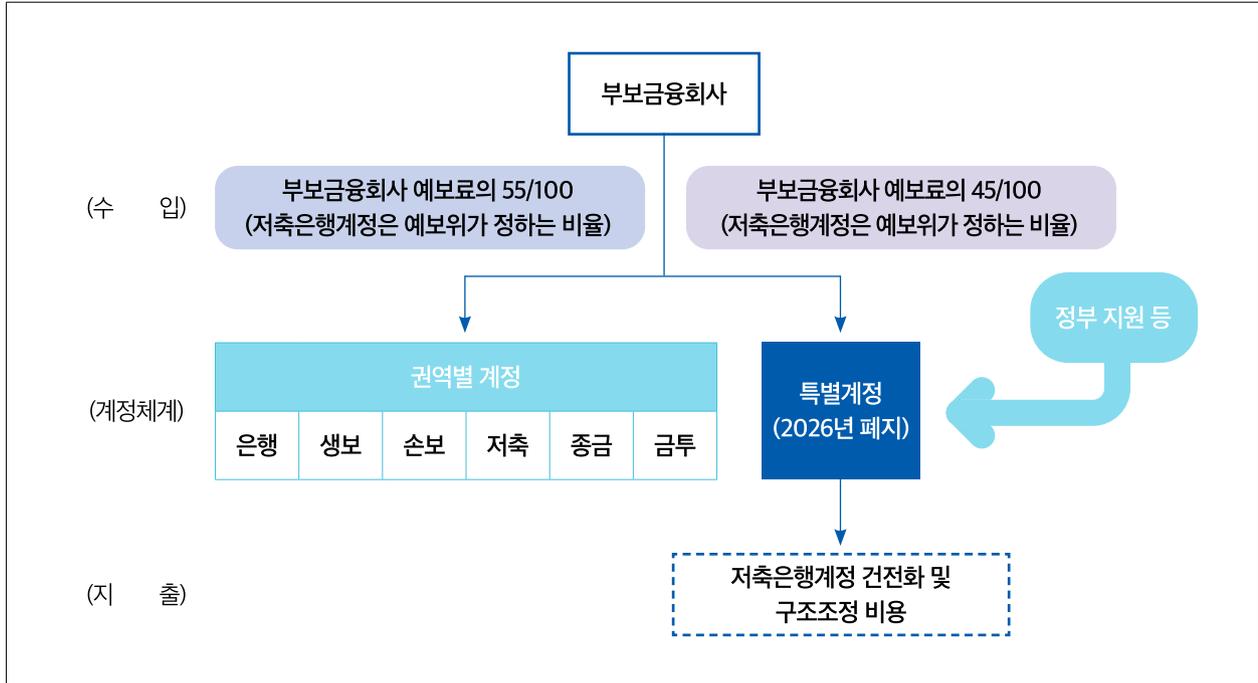
2) 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은 2022.12월말 종가 기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는 우선출자금 회수예정액 기준, 서울보증보험은 2018년도에 실시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계산 시 평가금액 기준

## 예금보험기금 관리

공사는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보험금 지급 등으로 2022년말까지 31개 저축은행에 27조 1,717억원을 사용하였다.

\*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보험료·차입금·채권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2011년 1월부터 새로이 발생한 저축은행의 부실 정리에 활용

<그림 1-1> 예금보험기금 계정 체계 및 수입 지출 구조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2012년~2014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총 2,500억원을 무이자·장기 상환 조건(10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차입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 채권’(이하 ‘예특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부보금융회사 차입금을 지속 상환하였으며, 단기사채 활용, 예특채의 사회적 채권(Social Bond) 인증 및 발행(2022년 6회, 총 1.39조원) 등을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하였다.

<표 1-3>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지원 및 조달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조원)

지 원 액			조 달 액	
삼화 등 31개 저축은행	출자, 출연 및 예금보험금 등	27.2	계정 간 차입	2.0
			외부조달 (특별계정채권 발행 등)	6.5
			보험료 등	18.7
합 계		27.2	합 계	27.2

한편, 공사는 예금보험료 감면 시스템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고, 감액률과 기금적립 수준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료 감면기준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말 기금적립률이 목표규모 하한을 초과한 생명보험업권에 대하여 2022년 예금보험료의 일부를 감액(70%)하였다.

## ESG · 안전 · 윤리 경영 실천

공사는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와 환경, 투명경영을 반영한 ESG전략체계를 별도로 수립하고 ESG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ESG경영 인프라를 2021년에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사는 2022년 실질적인 ESG경영 전환을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함으로써 ESG 실천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ESG경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사업의 선정기업 수를 확대하고 친환경 특화기업을 별도 선정하는 한편, 다각도의 협력사업을 모색하여 ESG 관점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의 니즈에 부합하는 후원을 전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친환경 공헌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ESG경영을 선도하였다.

동해안 산불 이재민을 위한 노사공동 성금 50백만원을 후원\*하고, 전국 취약계층 복지시설에 후원금, 생활가전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및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한 직거래장터를 개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사회공헌 노력과 성금 후원 등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원 유공장 최고명예장」 수상

더불어,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고경영자가 전 임직원에게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선포하고, 노·사 공동으로 ‘10대 Safety Golden Rules’을 제정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경영진 연간 안전보건 활동계획 마련하는 등 공사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였으며, 공사 전반의 안전 보건관리 수준을 제고하였다.

끝으로, 공사는 2022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추어, 2022년 4월 이행절차 및 서식을 구체화 하는 등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예금보험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윤리경영 추진계획 및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였다.

##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의 국제적 전파

공사는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 포럼(International Forum of Insurance Guarantee Schemes, FIGS) 등 국제기구의 고위직 당선 및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공사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공사가 고유 브랜드화하여 해외 예금보험기구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KDIC Global Training Program」을 통해 해외에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하고, 정부정책에 부응하였다.

우선, 공사는 체계적인 컨틴전시 플랜 수립 및 그간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 등을 통해 2022년 IADI 회원 총회에서 IADI 이사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공사는 총 92개 정회원 기구 중 2002년 IADI 창립 이후 이사직을 빠짐없이 유지한 3개 기구(공사, 미국예보, 일본예보) 중 하나로서 그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국제기구 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또한, 공사는 FIGS 의장단 및 정보공유워킹그룹장 기구로서 FIGS의 정보공유 확대, 인지도 제고, 회원규모 증대 등 보험계약자보호기구 간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하였다.

아울러, 「KDIC Global Training Program」을 통해 공사는 예금보험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해온 경험을 공유하는 등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하여 비대면 행사 개최가 불가피함에 따라 보험금 계산 실습 사이트,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현장감을 제고하였다.



# 제2장



## 조직 운영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제1절 조직 구성

### 1. 예금보험위원회

예금보험위원회는 공사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위원장인 공사 사장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이상 당연직 위원)와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포함(이상 위촉직 위원))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예금보험위원회는 12회 개최되었으며, 2023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금보험공사 예산안 등 보고안 20건, 의결안 28건을 심의하였다. 2022년 중 예금보험위원회 구성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 김태현 사장 퇴임(2022.9.1), 유재훈 사장 취임(2022.11.11.)
-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 이억원 차관에서 방기선 차관으로 변경(2022.5.9)  
금융위 도규상 부위원장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으로 변경(2022.5.17.)
- 위촉직 위원 : 한국은행 총재 추천 김성민 위원에서 허재성 위원으로 변경(2022.2.12.)

<표 II-1>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2022년 12월말 기준)

구 성		성 명
당연직 위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유 재 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기획재정부 차관	방 기 선
	한국은행 부총재	이 승 현
위촉직 위원	금융위원회 위촉	김 선 구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최 희 남
	한국은행총재 추천	허 재 성

**<표 II-2> 예금보험위원회의 주요 기능**

구 분	주 요 내 용
의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정관의 변경</li> <li>• 공사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li> <li>•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li> <li>• 출연금, 예금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액 내지 납부 유예</li> <li>•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 설정</li> <li>• 예금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li> <li>•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li> <li>•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li> <li>• 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li> <li>• 예금보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li>•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검사 실시 요청 또는 공동검사 참여 요청</li> <li>•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이전 명령, 파산신청 등 필요 조치 요청</li> <li>• 부실금융회사의 결정</li> <li>• 부실우려금융회사의 결정</li> <li>• 기금 계정간의 거래</li> <li>• 예금보험위원회 의사록의 공개 방법</li> <li>•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관련 필요 사항</li> <li>•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 관련 필요 사항</li> <li>• 가지급금의 지급</li> <li>• 최소비용원칙에 의한 자금지원 등의 예외 인정</li> <li>• 기금운용계획</li> <li>• 공사 업무와 관련한 제규정의 제·개정</li> <li>• 여유자금의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입 대상 유가증권의 지정</li> <li>- 예치 대상 부보금융회사의 지정</li> </ul> </li> </ul>
보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정상화이행약정 분기별 점검실적 보고</li> </ul>

## 2. 이사회 및 감사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 공사 예산의 편성 및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 결산, 경영 목표의 수립 및 변경, 주요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임원의 보수,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조직·인사 등 공사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 다른 법령·정관 또는 다른 내규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이내 및 비상임이사 7인 이내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022년에 12회 개최되었으며, 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 중장기 경영목표안 등 보고안 6건, 의결안 21건을 심의하였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이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표 II-3> 임 원

(2022년 12월말 기준)

직 위	성 명
사 장	유 재 훈
부 사 장	윤 차 용
상 임 이 사	김 상 기
상 임 이 사	이 미 영
상 임 이 사	공 석
상 임 이 사	공 석
비 상 임 이 사	성 영 애
비 상 임 이 사	김 진 일
비 상 임 이 사	김 영 도
비 상 임 이 사	김 정 범
비 상 임 이 사	박 노 욱
비 상 임 이 사	이 향 용
비 상 임 이 사	안 재 빈
감 사	김 태 철

**<표 II-4> 2022년 이사회 구성 변동사항**

일 자	변동 사항
2022. 1. 19.	이미영 이사 취임
2022. 1. 27.	윤차용 부사장 취임
2022. 3. 19.	조양익 이사 퇴임
2022. 9. 1.	김태현 사장 퇴임
	박노욱 이사, 이항용 이사, 안재빈 이사 취임
2022. 10. 5.	박상진 이사 퇴임
2022. 11. 11.	유재훈 사장 취임
2022. 11. 14.	이한규 감사 퇴임, 김태철 감사 취임

### 3. 조직 개편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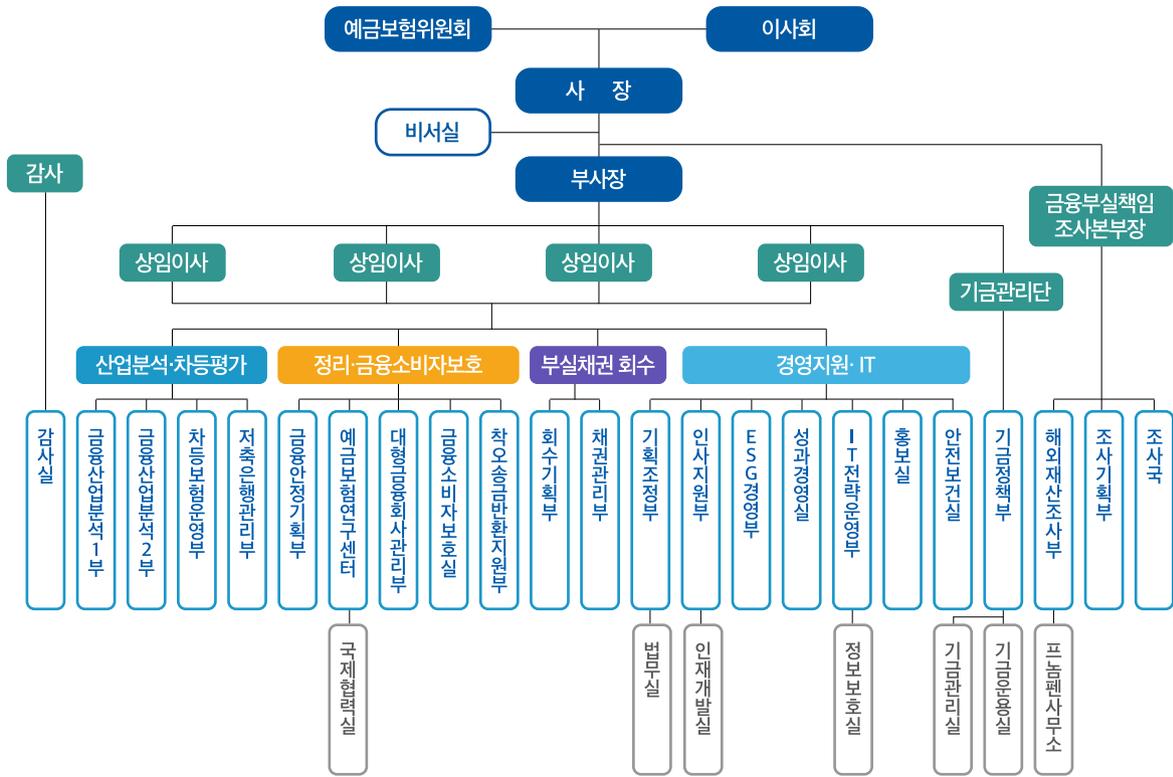
공사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사전적·예방적 부실 방지기능 및 정리기능을 통합·일원화함으로써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비하고, 분산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금융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금융제도개선부는 금융안정기획부로 재편하여 부실금융회사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안 대응이 가능하도록 업권별로 분산된 정리 업무를 통합하였다. 또한, 금융회사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여 도입하는 금융안정계정의 법제화 및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금융안정계정 입법지원TF를 신설하였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대상 여부 등 예금보험제도 업무는 금융소비자 보호실로 일원화하여, 자본시장 성장 등에 따라 복합 금융상품 분석 및 보호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였다.

한편, ESG 강화 정책 반영 및 부서의 업무 명확화를 위해 사회적가치경영부, 혁신경영실, 안전관리실을 각각 ESG경영부, 성과경영실, 안전보건실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림 II-1> 조직도



<표 II-5> 인원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현원, 단위: 명)

구분	임원	직원				임·직원 합계
		일반직	별정직 <sup>2)</sup>	업무지원직 <sup>3)</sup>	소계	
인원	12 <sup>1)</sup>	702	63	56	821	833

주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임이사 7인 포함  
2) 전문직 및 특정직 등  
3)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따라 2017년 12월 신설 직군

## 제2절 조직 관리

### 1. 중장기 경영계획

2022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금리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등 글로벌 불안요인에 따른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었으며, 금리인상에 따라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심화하였다. 또한 공공 기관 효율성 강화 등 신정부 출범에 따라 정책환경도 급변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임직원에게 기관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금융시장 안정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제고하고자 중장기 경영계획을 재정비하였다.

대내외 환경분석, 전 직급 대상 인터뷰, 국민·금융회사·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4년만에 전략체계를 개편하였다. 전략목표와 전략과제에 신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하였으며,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한 사업을 세부 실행과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 가. 비전

공사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관의 미래상 후보군을 도출하고, 국민·금융회사 직원·전문가 등 1,3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10월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안정기구, 국민안심 KDIC”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였다.

동 비전에는 기존의 예금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금융안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아울러 더 많은 금융상품을 보호하여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지향점을 나타낸다. 동 새로운 비전을 통해 공사 임직원에게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예금자 등 보호 및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림 II-2> KDIC 전략체계도



<그림 II-3> 새로운 비전과 의미



## 나.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 실행과제

공사는 2022년 10월 비전 달성과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하여, 사업기능 측면의 전략목표로 “금융시장 안정기능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를, 조직운영상 전략목표로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혁신”을 설정하였다.

또한 동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제적 위기대응, 기금체계 정비 등 기존의 핵심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신정부 정책과제를 반영하여 경영효율화 및 내부통제제도 강화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총 9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예금보험료 부과체계의 정합성 제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업권별 정리제도 도입, 투자자보호제도 개선 등 각각의 전략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37개 세부 실행과제를 설정하여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표 II-6> 전략 목표, 전략 과제 및 세부 실행과제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 실행과제
금융시장 안정 기능 강화	기금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효율적 지원자금 회수·관리	① 예금보험료 부과체계의 정합성 제고 및 예보기금의 안정적 조달·관리
		② 상환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상환대책 이행
		③ 기금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및 공익성의 조화
		④ 파산재단의 효율적 관리 및 회수 강화
		⑤ 효율적인 부실책임조사·재산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
	선제적 위기대응체제 구축	① 금융안정성 제고 및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한 대형금융회사 정리계획 작성
		②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
		③ 위기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④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업권별 정리제도 정비
		⑤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리스크 상시 감시 강화	① 상시 감시와 연계를 통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② 부실위험 정보수집·분석 및 적시대응을 위한 상시 감시 강화
		③ 선택과 집중을 통한 조사·공동검사의 효율적 수행
		④ 금융여건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 현황 및 리스크분석 강화

전략목표	전략과제	세부 실행과제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	예금자보호에서 금융소비자보호로의 패러다임 전환	① 예금자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표시제도 운영 강화
		②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개선
		③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투자자보호제도 개선
	선진화된 예금보험제도 및 정리체계 구축	① 환경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예금보험제도 개선
		②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 및 보험금 지급
		③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금융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금융교육 강화
		② 금융취약계층 대상 채무조정 활성화 및 재기지원
		③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미수령금 찾아주기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혁신	ESG경영 강화 및 경영 효율화	① ESG 인프라 구축 및 ESG경영 강화
		② 조직·운영 효율성 제고 및 경영 혁신
		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좋은 일터 만들기
		④ 보건·안전 경영 강화(신규)
		⑤ 재난 위기단계별 대응체계 강화
	엄정한 공직윤리 정립 및 내부통제제도 강화	① 윤리경영·인권보호 강화 및 반부패·청렴문화 내재화
		② 내부통제체계 강화
		③ 채용과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
		④ 상생의 노사협력 강화
		⑤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
	대국민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① 대국민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IT시스템 고도화
		②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시스템 품질 제고
③ 디지털금융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문역량 제고		
④ 미래과제 발굴 및 전략적 대응		

## 2. 조직문화

### 가. 상생·화합 기틀 마련

공사는 조직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구성원 간의 갈등 요소를 줄이고 상생·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였다.

2022년에는 조직 내 다양성 가치 존중과 올바르게 건전한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익명 설문조사', '팀별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 버리기' 등 20여개의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담당 부서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였다. 이렇듯 공사는 조직 내 직급별, 직군별, 연령별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구성원들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대면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업무를 중심으로 한 직급·직군·연령 간 상호 이해도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한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조직 내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고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① 팀원 간 협력 활동을 통해 팀워크 제고 및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1-Team'
- ② 선·후배직원 간 업무 내·외적인 소통과 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업무중심 멘토링'
- ③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현지 가이드와 온라인으로 여행하는 '랜선여행'
- ④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어린이 KDIC 체험행사'

향후에도 공사는 임직원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표 II-7> 공사 주요 조직문화 프로그램**

구분	1-Team	업무중심 멘토링	랜선 여행	어린이 KDIC
대상/기간	팀/반일	30명 내외/3개월	35명 내외/1시간 30분	60명 내외/종일
프로그램	가족공예, 도예, 인문·예술 등	공사 업무분야별 교육, 팀빌딩 활동 등	유튜브Live 활용, 현지가이드 해설	메타버스 견학, 어린이 금융교육 등

## 나. 합리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

공사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2005년말 전략적 성과관리제도(Balanced Score Card : BSC)를 도입하여 2006년 부서 단위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고 3급 이상 종합직원의 성과급에 반영하였으며, 2007년 팀 단위까지 평가대상을 확대한 후 2008년 평가결과부터 전체 종합직원 성과급에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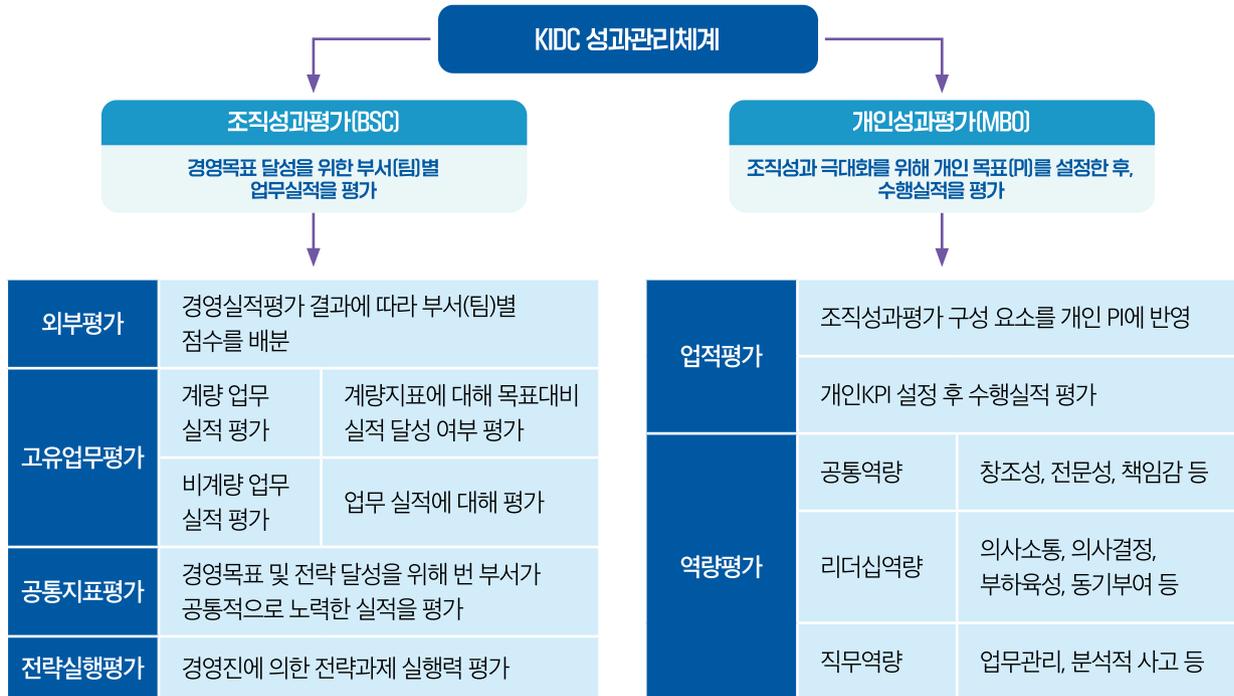
공사는 사회적 요구와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조직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직성과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22년에는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체계 강화’ 지표를 개선하는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였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성과평가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 설문조사,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조직성과관리 업무 메뉴얼을 작성 및 배포하는 등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평가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울러, 전 직원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2010년 노사합의로 도입한 개인성과평가제도(MBO)를 2012년부터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노사공동 성과평가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전사적 의견 수렴을 통해 개인성과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2018년에 상향평가 및 수평평가 등 입체적인 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일부 평가항목을 개선하는 한편 평가주기를 연2회로 확대(기존 1회)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개인성과평가 절차의 사전예고, 직군별 이의신청 제도 신설·개선, 승격후보자명부 공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피평가자의 평가결과 수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다.

<그림 II-4> KDIC 성과관리체계도



## 다. 업무관행 혁신 및 적극행정 선도

2022년 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추진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해 전사 경영 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적극행정의 문화 정착을 위해 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표시제도 개선, ②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한 선제적 부실 예방, ③ 미수령 배당금 적극 안내 등의 적극행정 관련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부보금융회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의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보호 여부 표시 의무화,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미수령 배당금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AI기반 챗봇 상담 서비스인 '예숨24' 오픈, 장기연체 고령·소액 채무자 연체이자 감면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의 혁신추진 및 적극행정 과제 수행 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직원을 혁신 선도 직원으로 선정하고 사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사 상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2022년 적극행정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실행한 팀에 대한 포상\*도 실시함으로써 개인과 팀 등 다양한 조직 단위에서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장려하였다.

\* 2022년 혁신 최우수사례 :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전계정' 도입 추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업무개선 아이디어 제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포상도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민과 함께 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공사에 높은 관심을 가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5기 국민참여단으로 위촉하기도 하였다.

한편, 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하였다. 우선, 감사원의 '현장면책' 제도를 참고하여 현장면책 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장면책 제도란, 적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에서 조기에 면책함으로써 일하는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간 공사에서는 실지감사 종료 후 면책 여부를 결정하였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지감사 현장에서도 면책 검토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해 검토 후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여 적극행정 기반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우수사례에 대한 감사 명의 내부포상을 실시하고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방만 경영 예방 및 정부경영지침 준수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감사 시에도 적극행정 모범사례를 다수 발굴하여 부서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였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모의신고 체험을 통하여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감사 소식지("監動뉴스")를 발간하여 공사 및 타 기관 적극행정 면책 사례를 소개하는 등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 3. 정보화

공사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부합하는 업무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3년말까지 IT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차세대 IT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에는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한 후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함과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선제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차세대 IT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관심을 전사적으로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추진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실무자 참여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각 부서의 시스템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와의 정기·비정기 미팅을 통해 차세대 목표시스템 설계를 위한 현재 업무 프로세스 및 규정을 파악하는 등 현행 업무시스템을 분석하고, 시스템 이용 시 개선 필요사항 등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분석·설계 결과물을 토대로 10월 차세대 IT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으며, 사용자 테스트 등을 거쳐 2023년말 정식 오픈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또한, 차세대 IT시스템 구축사업 과제 중 국민체감 선도과제인 민원응대 AI 챗봇 서비스와 VR 공매정보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2022년 6월에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민원응대 AI 챗봇 서비스는 공사의 업무정보(예금보험금 지급,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 6개 분야)를 활용하여 상담 서비스 및 민원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 기능을 24시간 원스탑으로 제공한다. 2022년 6월에 서비스 시행 이후 2022년 12월말까지 10,663명의 사용자가 28,516건의 문의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현재는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학습자료 수집, 데이터 정제를 통해 대화수준 향상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챗봇 서비스 제공 채널별 질문 유입현황 : 총 28,516건 중 홈페이지 16,367건, 미수령금 통합신청 546건, 착오송금 반환지원 11,603건 이용

VR공매정보서비스는 PF사업장 등 공매대상 물건 현황을 VR로 제작하여 현장답사가 어려운 투자자에게 시·공간 제약 없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공사의 공매정보 사이트를 통해 오픈하였다. PF 사업장 등 9개를 대상으로 공매물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가지 형태(파노라마VR, 360° 영상)로 제작하였고 해당 부동산 9건 중 3건을 2022년 중 매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계속해서 공매물건의 매각완료 등 상태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표 II-8> 차세대 IT시스템 구축사업

AI 챗봇		VR 구매정보	
• 예금보험금 제도, 착오송금 등 24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 구매대상 물건 현황 VR로 생동감 있게 제공	
			

또한, 공사는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공사의 중요 정보자산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임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으로써 공사의 긍정적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국정원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통신사 합동 디도스 공격 대응훈련, 해킹메일 대응훈련, 자체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등 각종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침해사고 예방 및 사이버공격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 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 정보보안 인식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공사 창립 이후 사이버 보안사고 ‘ZERO’ 달성 및 국가정보원 주관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에서 5년 연속(2018년~2022년) 준정부기관 중 최고수준(우수)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후화된 정보보안시스템(SSLVPN 및 웹방화벽)을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기술지원 및 보안취약점 대응을 강화하였으며, 차세대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시스템 개발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통 기능을 적용하여 프라이버시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였고, 출력물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등 대외 신뢰도를 제고한 결과, 공공기관 최초로 획득한 ISMS-P 인증\* 갱신 심사를 통과하여 4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표 II-9> 2022년 정보화 주요 대외평가 실적**

대외평가	주관기관	평가 결과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행정안전부	• 3년 연속 최고등급(우수) 달성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평가		• 최고등급(우수) 달성
•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정보자원 관리수준)		• 100점으로 “우수”성적 획득
•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8년 연속 최고등급(양호) 달성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국가정보원	• 5년 연속 최고수준(우수) 달성

아울러, 공사는 해외 예보기구를 대상으로 예금보험금지급시스템 등 우수 IT시스템 해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정부 분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간 2016년 몽골, 2017년 라오스, 2018년 카자흐스탄, 2019년 인도네시아, 2020년 알바니아 예금보험기구에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2022년에는 민간 IT컨설팅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예금보호원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인 해외 컨설팅 사업 추진의 결과,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발전과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11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유공자 표창)을 수상하였다.

## 4. 평판 관리

### 가. 기관 경영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2021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2022년 3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를 토대로 공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경영평가단으로부터 경영실적평가를 받았다.

2022년 6월에 발표된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 공사는 기관 평가에서 종합 “B등급”을 달성하였다.

## 나. 기금 운용

공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재부의 기금 운용 실태를 조사·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금운용평가는 사업운영과 자산운용부문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공사는 2021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기금운용실적보고서(자산운용부문)를 작성하여 2022년 2월 기금운용평가단에 제출하였으며, 동 평가단은 이를 토대로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6월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양호”등급을 획득하였다

## 다. 청렴도

공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의 대상 기관이다.

공사 내부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의 일환으로써 실시(설문조사)한 「2022년도 청렴체감도 측정」결과, 청렴모니터링(청렴콜) 등 전사적 부패 취약분야 개선·운영 노력으로 “3등급”을 기록하였고, 기관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노력과 운영 실적, 시책추진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2022년도 청렴노력도 평가」에서는 “3등급”을 기록하였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하고 부패실태를 감점하여 산정하는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는 3등급을 기록하였다. 향후 공사는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여 ‘2023년 KDIC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청렴수준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 라.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에 따라, 연 1회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실적보고서를 2022년 3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평가단으로부터 관련 평가를 받았다. 2022년 6월에 발표된 2021년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공사는 “B(양호)” 등급을 획득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으며, 공사는 2022년 1월 자체감사활동 실적을 감사원에 제출하고 여타 자체감사기구 직원을 포함하는 평가단으로부터 실사를 받았다. 2022년 5월에 발표된 2022년(2021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공사는 “C 등급”을 획득하였다.

## 제3절 ESG경영

### 1. 개요

공사는 2021년 하반기에 마련한 ESG 전략체계를 기반으로, 2022년 ESG경영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ESG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II-5> ESG 전략 체계(2021년 수립)



공사는 지속가능경영 실현 노력 및 ESG경영 성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기 위해 2018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왔다. 2022년에도 국제가이드라인 및 표준을 반영한 「2021년 ESG경영보고서」를 통해 공사의 ESG경영 성과를 대외에 공개하였다. 동 보고서는 LACP(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에서 주관하는 「Vision Award」 지속가능경영 부문에서 3년 연속으로 Platinum을 수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사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ESG경영 역량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함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ESG경영 필요성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사의 ESG경영 실천 노력을 전파하기 위해 ESG 뉴스레터를 제작·배포하였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발간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ESG 관련 대내외 소식을 시의성있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공사는 2020년부터 이어온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지원사업을 2022년에도 실시하였다. ESG추진위원회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30개를 선정하였으며, 각 3백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2022년에는 작년(25개사)에 비해 수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일반공모 방식과 함께 친환경 중요성에 부응하여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환경분야 특화기업을 별도 선정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선정 기업 8개사 및 전년도 선정 기업 1개사 등 총 9개 기업과 협업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II-10>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협업사업 추진 내역**

지원 기업 (사업 내용)	협업 내용
지와이아이엔씨 (친환경 가방 제작 및 판매)	• 임직원이 기부한 중고 청의류를 업사이클하여 에코백 제작 → 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기증
코끼리공장 (중고 장난감 수리 및 업사이클 제품 제작·판매)	• 임직원이 기부한 중고 장난감을 업사이클하여 친환경 교구재 제작 →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기증
아나키아 (친환경 안전화를 제작 및 판매)	• 친환경 안전화를 구입하여 시설관리 자회사 직원 제공
공공디자인이즘 (친환경 일상용품 제작 및 판매)	• 친환경 일상용품을 구입하여 취약한 거주환경에 놓인 재한이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에게 제공
해피에이징 (낙상예방물품 제작 및 판매)	• 낙상예방물품을 구입하여 노인계층 기증
농업회사법인 상생 (유기농 쌀음료·소금 제조 및 판매)	• 공사 주최 직거래장터 초청 • 판매부스 제공 등 판로 지원
정인장애인복지회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등)	•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 지원
고래실 (옥천 지역 문화콘텐츠 개발 등)	•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 지원
트립티 (공정무역 커피제품 제조 및 판매)	• 공사 사보 「예보광장」에 홍보기사 게재

## 2. Environment

공사는 전사적인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2년 4월부터 「KDIC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캠페인의 일환으로 ‘ECO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사용 등을 실천할 때마다 일정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에서의 탄소저감활동 실천을 독려했고, 제도 실시 결과 2022년 한 해 동안 공사 임직원은 총 8,119건의 탄소배출 저감활동을 실천하였다. 공사는 2022년 12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K-RE100 참여기업으로 등록하여 탄소중립 및 ESG경영 추진을 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비영리사단법인 노을공원시민모임에 묘목 850주를 기부, 서울시설공단과 청계천 초화 식재\* 및 정기적인 산책로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 (6月) 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주)대상, (주)코리아세븐 참여, (10月) 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참여

아울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점지역 건물 내 카페의 1회용컵 사용금지 캠페인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에 참여하여, 공사 사옥 로비의 커피전문점을 다회용컵만을 제공하는 제로카페로 전환하였다.

**<사진 II-1> 탄소중립 실천 및 지역발전 기여**



공사는 환경분야 특화기업과 친환경 물품을 제작해 여러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협업기업의 성장 지원과 더불어 친환경·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먼저, 임직원 참여형 중고물품 기부 캠페인을 통해 조달한 중고물품을 ‘지와이아이엔씨’와 ‘코끼리공장’에 전달하여, 이를 재료로 한 에코백과 친환경 교구재(조립식 장난감)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물품은 서울시 중구 내 복지관 및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해 일상생활 또는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업사이클 일상용품을 제작하는 사회적기업 ‘공공디자인이즘’과도 협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기업이 제작하는 친환경 생활용품 키트(파우치, 비누, 칫솔, 치약 등)를 구입하여, 국내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친환경 안전화를 제작하는 사회적기업 ‘아나키야’로부터는 폐기족으로 제작된 친환경 안전화를 구매하여, 공사의 시설관리 자회사 ‘예울FMC’ 직원들에게 제공하였다.

## 3. Social

### 가.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제공

공사는 향후 5개년 채용 분석을 통해 연간 단위 채용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하반기 채용규모를 확대(21명 → 30명)하여 2022년에 총 36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고, 지역인재 우대가점 부여 등을 통해 9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하였다.

아울러, 장애인 채용확대를 위해 금융공공기관 최고 수준의 우대 가점(15%) 부여와 장애인 구분채용을 통해 2022년 총 7명을 채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2명을 일반정규직으로 공개채용하고, 퇴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경력 활용이 가능한 신규 업무 발굴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그 결과 6년 만에 기간제 검사역(7명)을 채용하였다.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험형 인턴 채용규모를 확대(74명 → 81명)하여 81명을 채용하였고 최초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총 2회 11명에게 직업능력 및 직무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사는 민간 위탁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였다. 우선, 공사가 관리하는 36개 파산 재단에 근무하는 약 200여명의 업무보조인이 파산 종결 이후 안정적 일자리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 프로그램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공사의 자회사인 케이알앤씨(KR&C)는 2022년 6월 29일 채권 관리·추심을 위탁을 위한 신용정보사를 기존보다 확대 선정(3→6개사)함으로써 신용정보사 직원 116명의 민간일 자리를 창출에 기여하였다.

### 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공사는 2011~2015년 30개 저축은행이 파산함에 따라 파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담보부동산을 관리·매각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부동산을 비워두기보다는 청년창업가, 지역주민, 사회적약자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회단체(충북 청년 창업사관학교)와 협력하여 청주 소재 상가를 창업공간으로 계속 무상 제공하였고, 지자체(남양주시청)와 협의하여 남양주 소재 상가 1개호를 소상공인연합회 물품 홍보공간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경남 소재 풍원자동차학원 (PF사업장)을 코로나19 피해자 및 지역주민 등을 위해 수강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였다.

<사진 II-2> 2022년도 PF사업장 등 공익활용



공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보 꿈나무 장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각 1백만원)을 수여\*하는 한편, 국군장병 위문 성금, 국가유공자 방한용품 후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공헌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특히, 3월 동해안 산불 이재민을 위해 노사공동 성금 50백만원을 후원하고 그간의 사회공헌 노력과 성금 후원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원 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하였다.

\* 2005년부터 총 18회에 걸쳐 290명에게 2억 7,740만원의 장학금 수여

<사진 II-3> 사회취약계층 후원 실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표 II-11> 2022년 주요 사회공헌활동 내역

(2022년 12월말 기준)

구분	활동명	활동 내용	활동시기
이웃 사랑	사회취약계층 지원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시설을 발굴하여 후원	연중 상시
	예보 꿈나무 장학 사업	저소득 취약가정 고등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 지원	2022.9월
	무료급식 봉사활동	불우이웃 등 사회취약계층에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2022.4분기
지역 공감	국군장병 및 국가유공자 돕기	국군장병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위문 성금, 방한용품 등 후원	2022.12월
	산불 이재민 지원	국가재난 극복을 위한 성금 후원	2022.3월
농어촌 동반	행복예감 직거래장터 개최	농가 및 사회적 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장터 개최	2022.9월
환경 보호	친환경 농산물 후원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여 사회취약계층 복지시설에 기부	2022.12월
	나무심기	묘목을 구입하여 기부하고 나무심기 활동 참여	2022.11월
	지역사회 환경정화	초화 식재 및 청계천 산책로 정화활동	연중 상시

\* 공사 외부기금 활용

공사는 2020년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 기관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2022년 예금보험공사 동반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직원의 자발적 참여 유도하고자 동반성장 실적이 우수한 팀과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여 실적을 창출하였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도입한 「농어촌ESG실천인정제도」에도 적극 참여하여, 농어업·농어촌과의 상생협력 노력, ESG경영 등을 통한 환경적·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 등을 인정받아 인증패를 수여하였다.

또한, 공사는 중소기업의 결제대금회수 안정성 및 금융비용 절감 지원을 위하여 '상생결제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NH농협은행과 약정체결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21년 7월 도입 후 2건, 총 34백만원의 이용실적을 달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계약규모, 거래지속가능 여부 및 2차 이하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활용이 가능한 계약리스트를 발굴하고 상생결제 운영담당자 방문설명회 추진 등을 통해 20건, 총 17억원의 이용 실적을 달성하였다.

## 다. 금융교육 및 공공데이터 공유 확대

공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금융약계층을 중심으로 매년 생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기로 접어들어 이에 따른 취약계층 중심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등으로 교육을 확대하였다.(대면 및 비대면 총 1,173회로 전년대비 39% 확대). 특히, 비대면 교육운영 다양화 및 소규모-다회차 분산교육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등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대면교육 907건(전년대비 42%), 유튜브 및 쌍방향 온라인 교육 266건(전년대비 27%) 가량 확대되었다.

공사는 금융위 주관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고령층 주 담당기관 지정되어 유관기관 공동교육 기획·운영을 주도하였으며(6월), 기재부 주관 경제교육단체협의회 경제교육 워크숍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여 12월 「경제교육 대상」을 수상하였다.

&lt;표 II-12&gt; 비대면 생활금융교육 현황

구분	유튜브 교육	실시간·쌍방향 교육
대상	금융취약계층	금융취약계층, 미래금융소비자 등
구성	- (노인) 디지털금융 이해 등 - (장애인) 계획적인 금전관리 등 - (지역아동) 용돈관리, 현명한 소비 등	- 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간·쌍방향 소통 가능한 생활금융교육 진행
실적	205회	6회
사진		

공사는 보호대상 금융상품, 부보대상 금융회사 정보, 파산재단 부동산 공매정보 등 국민 관심이 많고 이용가치가 높은 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하고 있다.

또한, 쏘부서의 데이터 발굴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신규 개방 후보 데이터 33개 및 개선 대상 공공데이터 15개 등 총 48개를 도출하였으며, 신규 개방 후보 33개 데이터 중 금융·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제도 안내 영상 데이터와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예금자보호안내문(베트남어, 중국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데이터를 포함한 총 18개의 공공데이터를 2022년말까지 우선으로 신규 개방 추진하여, 2022년말 기준 누적 총 66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lt;표 II-13&gt; 연도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개방 건수(신규)	3개	4개	9개	6개	5개	18개
• 개방 건수(누적)	24개	28개	37개	43개	48개	66개

이러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 노력의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우수’)을 획득하였다.

## 라. 안전 및 재난관리

공사는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고경영자가 전임직원에게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12월 9일)하였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 경영진 연간 안전보건 활동계획 수립과 더불어 ISO 45001, 도급사업 안전관리지침 등 각종 매뉴얼, 절차서와 지침서를 공사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고,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등 공사 전반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선, 공사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수칙으로 '10대 Safety Golden Rules'을 노·사 공동으로 제정(12월 7일)함으로써, 안전보건 문화가 공사에 정착되도록 하였고, 경영진이 직접 공사 사옥 및 시설관리자회사 작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였다.

<사진 II-4> 경영진의 안전활동 참여



공사는 임직원의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공사 전 임직원 및 파산재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전환 등을 위해 사장 및 부서장 등 전 경영진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특강(2회)을 실시하였다.

**<사진 II-5> 경영진 특강**

또한, 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상황을 대비한 대피훈련도 실시하고,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전 직원 대상 건강관리 등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교육 영상을 파고TV(공사 포탈)에 게시하여 임직원 누구나 언제든지 안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진 II-6> 안전교육 활동**

## 4. Governance

공사는 윤리경영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대에 발맞추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전략과제로 삼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6월에는 2년 전 인증 획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의 사후심사 절차를 진행, 기존보다 더욱 엄격한 부패리스크 식별 작업 및 철저한 서류·대면 심사를 통해 부적합 없이 인증을 유지하여 공사 내 부패방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22년 5월 시행 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공사 내규를 제정하여 제도를 정비하였다. 2022년 4월 「예금보험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이행절차 및 서식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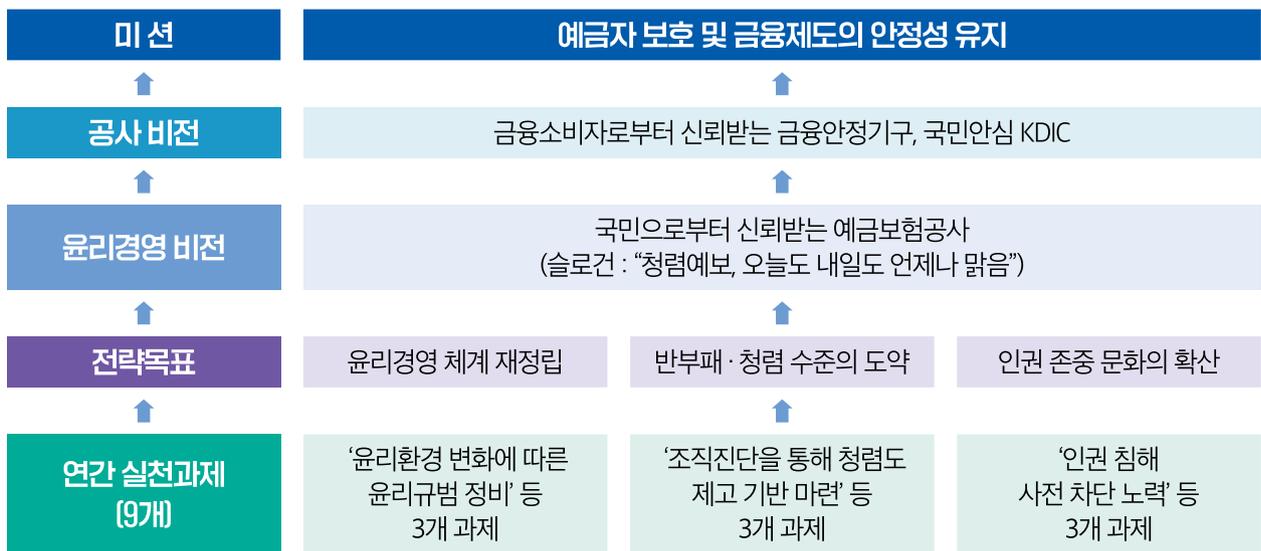
공사는 ‘청렴 모니터링’과 ‘직무관련 외부인 접촉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소를 사전에 원천봉쇄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부패사고를 예방하였다.

아울러, 반부패 청렴시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청렴 DAY’ 및 ‘청렴 Talk’를 통해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반부패·청렴시책 및 새로운 제도를 소개하여 청렴문화를 내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기관장과의 청렴소통을 위한 청렴토크콘서트를 통해 고위직의 반부패·청렴 의지를 전파하고, 고위직·전 직원·부패취약분야 업무담당자·승격자·신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교육을 수행함과 동시에 갑질·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하고 도덕적인 윤리 경영 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인권중시 기조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 권고에도 부응하고 있다. 인권 관련 외부전문가,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의 인권경영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논의·확정하였으며, 기관운영 부문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사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인권침해 온라인 신고 인터페이스를 간편화하여 신고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했다.

공사는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한 <KDIC 모범거래모델>을 기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4대 유형별 준수사항을 실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와 갑질 방지 체크리스트 간 대조·확인을 통해 공정거래를 위한 사내 문화 조성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2년 5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전 부서에 안내·홍보하여, 수의계약 관련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표 II-14> 윤리경영 추진 전략 체계도



<윤리경영 추진체계>



※ 구성 및 기능

- 1) 사장+부사장+이사 4명, 외부전문가 3명, 주요사항 심의·의결
- 2) 혁신경영실, 감사실 등 관련 6개 부서장

## 제4절 커뮤니케이션

### 1. 예금자보호제도 홍보

2022년 공사는 예보제도 및 주요 대고객 업무에 대하여 광고, 유튜브 영상, SNS 이벤트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사 홈페이지 및 SNS, TV 방송, 유튜브·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KTX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였다.

먼저, 공사의 역할 및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TV CF 광고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행복한 일상을 공사가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지상파, 종편, 케이블 TV 및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광고를 송출함으로써 폭넓은 홍보를 진행하였다.

한편, 2022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사 SNS 채널을 통해 초성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영상, 카드뉴스, 사보 기사화 등 각 부서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사 대고객 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을 제고하였다.

<표 II-15>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콘텐츠 제작

TV CF	신입직원 채용안내	착오송금 1주년 이벤트
		

<표 II-16>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다음으로,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플랫폼 채널을 통한 광고를 확대하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및 예금보호한도에 대한 광고를 기존 유튜브,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도 실시하였고, 특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배너 광고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하나인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넷, 모바일 매체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였다.

공사 사보 「예보광장」을 통해서도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였다. 예보광장 50호(2022년 봄·여름호)에서는 2022년 6월 개시된 공사 챗봇 서비스 「예솜24」 안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예금 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위해서도 고객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였다. 우선 국내 거주 외국인들 위해서는 예보제도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외국어로 안내하는 리플릿 7종을 전국 다문화센터 등에 배포하고,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하였다. 또한, 고령층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홍보물품을 도심지역을 제외한 전국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배포하였다. 이외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거나 사보 기사를 수록하였다.

## 2.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협력

### 가.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강화

#### (1) 글로벌 인지도 제고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posit Insurers, IADI)」는 92개 정회원, 10개 준회원, 17개 파트너 기구의 총 119개 기구로 구성된 세계 각국 예금보험기구의 협의체이다. 공사는 IADI가 설립된 2002년부터 창립회원이자 이사 기구로서 그간 IADI의 주요정책 및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2022년에도 공사는 IADI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제기구 내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사는 IADI 핵심준칙 개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회원으로서 총 3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공사의 의견과 입장을 개진하는 등 예보제도 관련 국제기준의 제·개정에 있어 공사의 입지를 제고하였다. 또한, 공사는 핀테크 실무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관련 정책 브리핑 보고서를 작성하여 IADI 회원기구에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의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선진 예금보험기구로서 공사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표 II-17> 2022년 공사의 주요 IADI 활동 내역**

시기	장소	행사명	활동 내역
3월	화상	제72차 IADI 이사회	• 핵심준칙 개정방향 수립, 신규 회원 가입 승인 등
6월	스위스(바젤)	제73차 IADI 이사회	• IADI 재무건전성 제고방안 및 향후 운영 계획 논의 등
9월	스위스(바젤)	IADI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 컨퍼런스 참석 및 주요기구 면담·협의, KDIC Global Training Program 홍보 등
10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제21차 IADI 연차총회 및 국제컨퍼런스	• IADI 이사 당선, 연차보고서·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승인, 컨퍼런스 참석 등
11월	인도네시아(발리)	제2차 IADI APRC Study Visit 및 국제세미나	• 세미나 참석 및 MOU 갱신 논의 등

## (2) 글로벌 리더십 확대

공사는 2022년 10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제21차 IADI 연차총회에서 92개 정회원 기구가 투표한 가운데 이사로 선출되었다. 이사회(Executive Council Committee)는 IADI의 전략,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는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IADI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이번 이사 선출에 따라 공사는 총 92개 정회원 기구 중 2002년 IADI 창립 이후 약 20년 간 지속적으로 이사직을 유지한 3개 기구(공사, 미국예보, 일본예보) 중 하나로서 그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금번 이사 선출을 통해 향후 이사회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예보제도의 선진화 및 기구 간 국제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보험계약자보호기구포럼(International Forum of Insurance Guarantee Schemes, IFIGS)」은 전 세계 보험계약자보호기구 간 국제협력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조직된 협의체로서, 현재 26개 정회원 및 4개 준회원 등 총 30개 회원기구가 활동 중인 국제기구 성격의 협의체이다.

공사는 IFIGS가 설립된 2013년부터 해당 기구의 창립회원으로 활동해왔으며, 2019년말 의장단(Management Committee)으로 선출되어 2020년부터 제1부의장직, 의장직, 제2부의장직을 각 1년씩 차례로 수행하였다. 2022년 공사는 제2부의장기구로서 제9차 연차총회 및 분기별 의장단 정례회의에 참여하여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IFIGS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기획·총괄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적극 발휘하였다.

특히, 공사는 2021년 「중장기 전략수립 워킹그룹」 설치하여 정보공유 활성화, 인지도 제고, 회원규모 증대로 이루어진 IFIGS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22년에는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첫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설문조사를 기획·실시하고, 분기별로 IFIGS 뉴스레터를 발간하였다. 또한, IFIGS 전체 회원기구를 대상으로 Town Hall 세션을 2회 실시하고, 개별 회원기구와의 양자미팅을 통해 IFIGS 주요 업무현황을 회원기구와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통해 IFIGS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

다음으로, 공사는 IFIGS의 역할 및 대외적 인지도를 강화하고,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하여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세계은행(WB) 등이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에 대해 보험계약자보호기구 관점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보험계약자보호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표하는 등 주도적으로 대외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공사는 IFIGS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회원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2022년도에는 카자흐스탄이 신규 정회원기구로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이 공사는 2022년 IFIGS가 내부역량 강화 및 대외 인지도 제고를 통해 정식 국제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며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사진 II-7> IFIGS 국제컨퍼런스 및 제9차 연차총회



## 나. 해외 예금보험기구와의 교류 확대

### (1) 글로벌 연수프로그램 「KDIC Global Training Program」운영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등에 대한 해외 각국의 지속적인 연수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사는 2017년부터 정례화된 글로벌 예금보험제도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예보기구 임직원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연수에 참가하는 집합연수 방식으로 글로벌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방역조치로 인해 해외 예보기구 임직원들의 한국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0년부터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2022년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개최한 제8회 글로벌 연수프로그램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 총 19개국 예보기구 임직원 280여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비대면 방식 개최로 공간 및 인원 제약이 사라짐에 따라 연수 참가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불가리아 예보기구 임직원이 신규로 연수에 참가하였다.

#### <사진 II-8> 2022년 제8회 「KDIC Global Training Program」개최



2022년도 행사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기금 관리(Resolution & Fund Management)’를 주제로 공사의 정리 방법, 보험금 지급, 차등보험료율제도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 한국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제도 도입과 정리계획 수립 사례를 최초 소개하였으며, 현장감 제고를 위해 보험금 계산 실습 사이트, 메타버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함으로써 비대면 방식의 약점을 보완하였다.

## (2)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활성화

한국의 위기대응 및 예금보험제도 운영경험 공유에 대한 해외 예보기구 등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사는 2010년부터 '예보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을 시작하여 맞춤형 연수, 세미나,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다.

공사는 해외 예보기구의 요청으로 한국의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위기 극복 경험 등을 주제로 7월에는 알바니아 예금보험원(ADIA)과 타지키스탄 예금보험기구(IDIF)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을 대상으로 각각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베트남 예금보험기구(DIV)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 및 차등보험료율제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공사는 향후에도 맞춤형 예보제도 운영경험 해외공유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공사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 (3) MOU 체결을 통한 정보공유 및 인력교류 확대

공사는 해외 예보기구와의 상호협력 증진과 정보공유 및 인력교류를 목적으로 해외 예보기구 및 중앙은행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왔다.

2022년 12월말 기준 공사는 23개국 25개 기구와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요르단 예금보험공사(JODIC), 튀르키예 예금보험기금(SDIF), 말레이시아 예금보험공사(PIDM), 베트남 예금보험기구(DIV) 및 인도네시아 예금보험공사(IDIC)와 체결한 MOU를 갱신하였다.

### 3. 예금보험제도 연구

#### 가. 연구 수행

2022년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고인플레이션 등으로 전 세계가 긴축 기조로 돌아서고 비은행금융증개·가상자산 시장 등 새로운 분야의 리스크가 대두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예보제도의 선제적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기 시 예보기구의 역할, 시스템리스크 측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시사점 도출 등 위기대응력을 확충하기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가상자산, 빅테크,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의 부상으로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본질과 내재가치, 향후 전망 등을 주제로 연구를 지속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금융안전망 기구로서 공사의 역할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II-18> 2022년 주요 연구 현황**

구분	주요 연구 주제
예금보험제도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대응을 위한 중앙은행과 예보기구의 역할 비교</li> <li>• 공사 고유 시스템리스크 측정지표(CISS) 개발 및 활용</li> <li>• 공급부족 사태: 공급망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li> <li>•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시장 시스템리스크 측정모형 개발</li> <li>•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li> <li>• 한국과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투자자보호제도·임직원 제재제도 비교</li> <li>• 일본·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추진 현황</li> </ul>
디지털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각투자 관련 소비자 보호 이슈</li> <li>•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른 금융산업 위험요인</li> <li>• 가상자산의 개념 및 블록체인의 기술의 특징</li> </ul>

공사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사 임직원 등에게 해외 금융이슈 및 정책·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을 매월 발간하고 있다.

특히, 연구위원들이 해외의 주요 연구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학술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외 주요 기관들의 정책 동향을 시의성 있게 전달하여 임직원의 금융관련 지식 함양 및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하였다.

**<표 II-19> 2022년 글로벌 예금보험 브리핑 주제**

구분	주제
1월호	• DeFi의 잠재 위험과 탈중앙화라는 환상(BIS) 등 7건
2월호	•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ETF 상장: 도입배경과 영향 및 전망(BIS) 등 6건
3월호	• 빅테크 금융서비스의 잠재리스크와 규제 방향(IMF) 등 6건
4월호	• 팬데믹 이후 주택시장 리스크(BIS) 등 5건
5월호	• 탈중앙화 금융(DeFi)의 특징 및 규제·감독 방안(NBER) 등 5건
6월호	• Retail CBDC 도입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5건
7월호	• 코로나19 이후 비트코인 가격과 주가 동조화로 비트코인의 헤지기능 약화 등 5건
8월호	• 팬데믹 이후 중앙은행의 오판과 고인플레이션(CEPR) 등 4건
9월호	•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FRB) 등 4건
10월호	• 뉴질랜드, 예보제도 도입법안 마련 등 4건
11월호	• 중소형은행 정리 시 자산·부채 이전방식 적극 활용 제안(ECB) 등 4건
12월호	•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위험요인 분석(캐나다 BOC) 등 5건

## 나. 연구 결과 공유

공사는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의성 있는 학술행사 개최와 함께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결과물을 대내외에 공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2022년도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현장 참석 외에 공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중계를 병행하여 심포지엄 참가 인원 확대 등 연구 저변을 넓히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표 II-20> 2022년 정책심포지엄 주요 발표 내용**

개최	방식	주요 발표 내용
2022년 12월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향”</li> </ul> </li> <li>• 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션1)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안정 및 소비자보호 제고 방안</li> <li>- (세션2) 디지털자산시장의 국제 규제동향과 스테이블코인</li> </ul> </li> </ul>

**<사진 II-9> 2022년 정책심포지엄(2022년 12월)**

공사는 예금보험제도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등을 주제로 한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금융안정연구(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와 “외부연구지원 공모논문집” 등에 수록·발간하고 있으며, 2022.11월 한국연구재단 주관 등재학술지 재인증 평가를 통과하여 학술지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계속 인정받게 되었다.

공사가 생산한 연구성과물(논문·보고서 등)의 대중적 공유를 위해 3편의 홍보동영상을 공사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다. 홍보영상은 논문 작성 취지 및 특징 등을 강조하고, 논문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저자 인터뷰를 포함하였다. 또한, 해외 이용자 지원을 위하여 영문 자막을 추가하였다.

<표 II -21> 2022년 게재 논문

제 목	게재 논문
<p>금융안정연구 (제23권 1, 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은행전자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발행에 따른 법적 문제와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li> <li>• 디지털 금융혁신과 예금보험</li> <li>• 핀테크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li> <li>• 대용량 거시-금융 자료를 이용한 원/달러 환율 변동의 예측력 평가</li> <li>• 미국 긴축 통화충격이 국내 금융 및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li> <li>•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기초한 가계 부실징후 분석</li> <li>•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사후피해구제제도를 중심으로-</li> <li>• 금리와 자산가격 변화가 가계부채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li> </ul>
<p>외부연구지원 공모 논문집 (통권 제19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보험기금의 미국 외 선진국 국채 운용 필요성 검토</li> <li>•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개선방안</li> <li>• 변인 선택 방법을 이용한 국내 금리 변동성 분석</li> </ul>

<그림 II -6> 연구성과물 홍보영상

홍보영상1 (2022년 5월)	홍보영상2 (2022년 9월)	홍보영상3 (2022년 11월)
		



# 제3장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예금보험 제도 개선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제1절 금융안정계정 도입 추진

### 1. 배경

시장규율 및 당국의 상시감독 등에도 불구하고,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예측 불가한 상황 발생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시장 불안 등에 따른 금융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혼란 및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금융회사 부실이 현실화 될 경우 예금자 피해 발생 및 예보기금 손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의 상설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미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에서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과거 금융안정기금, 은행자본확충펀드 등 이와 유사한 목적의 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다만, 이들 제도에는 한시적 운영, 재정소요 등의 운영상 제약이 존재했다. 반면, 공사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금융안정계정’은 업계의 부담으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상시적 금융시장 안정 제도이다.

금융산업의 연계성 심화로 특정부문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및 부동산 PF發 자금시장 경색 등 시장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한 예보기금의 활용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이 금융회사를 적시에 지원하여 부실 및 예금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금손실을 최소화하는 상시 위기대응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2. 개요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 및 금융제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하게 될 경우,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정상 금융회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 시행 전 자금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며, 기타 금융안정제도와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 제도는 위기 양상에 따라 공사가 금융회사에 유동성공급 또는 자본확충을 지원한 후 일정 기한 내 회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동성공급 방식은 금융회사가 시장급변으로 기 발행한 만기도래채권에 대한 차환발행 등이 곤란할 경우, 공사가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보증함으로써 원활한 차환발행 등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한편, 자본확충 방식은 금융제도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공사가 금융회사의 후순위채 또는 우선주 등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금융안정계정을 운영하기 위해 공사는 예보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할 예정이며, '수익자 부담' 및 '전액 회수'를 전제로 정부출연 및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을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적인 정부의 재정부담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동 제도의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지원받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 3. 전망

2022년에 공사는 금융시장·제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의 금융회사가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 및 자본확충 지원을 통해 위기전염을 차단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제도의 도입을 본격 추진하였다.

공사는 2021년 8월 한국금융연구센터와의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방안의 기본 방향을 수립한 이래, 2022년 상반기에 예보위와 민관합동TF회의, 하반기에 국회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제도 도입 관련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후 금융위가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22년 8월 31일~10월 11일) 하여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2022년 11월 18일, 국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의 대표발의로 금융안정계정 도입 관련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되었으며, 금융위는 이와 별도로 정부입법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22년 12월 20일에 금융위의 정부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말 국회에 최종 제출되었다.

동 제도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도입될 경우, 기존의 시장안정조치와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한 효과적인 위기대응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 도입만으로도 금융시장 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적시 지원을 통해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는 예금자보호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III-1>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 관련 정책세미나



## 제2절 예금보험제도 개선

### 1. 개요

공사는 경제성장 등에 따른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 보호한도·목표기금 규모·예금보험료율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계·연구소 등 민간전문가와의 여러 차례 간담회, 소비자단체 및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2022년 3월 적정 예보료율 등 검토를 위한 외부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과거 구조조정비용 처리방안을 고려한 기금적립 필요수준, 보호한도 조정 시 영향 등 기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각계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금융위·예보·금융업권·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TF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예보제도 개선 관련 주요 검토과제를 논의하였다.

공사는 제도 개선 추진내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으며, 2023년 8월까지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 후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연금저축 등의 노후·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 2. 세부사항 정비

2023년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권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회사 부채평가 방식이 기존 원가평가 방식에서 시가평가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IFRS17 시행에도 예금보험금 지급 대상(보호대상)은 원가기준의 해약식 책임준비금으로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과기준을 유지하도록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안정적인 예금보험료 수입 등을 통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공사는 예금자 등이 투자자예탁금과 예금보험기금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투자자예탁금을 예금자 등에게 우선하여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사가 각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예금보험금에서 공제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시행령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다. 공사가 이를 위해 노력하여 정부는 현행 보험회사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원가방식 책임준비금) 유지와 함께 ① 예금보험금을 계산하는 경우, 예치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투자자예탁금을 제외하도록 명확화 ②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을 구체화 ③ 과태료 부과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22년 12월 27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제3절 착오송금 반환지원

### 1. 개요

최근 인터넷·모바일 banking 확산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 거래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반면 착오송금 발생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전에는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락이 불가하거나 반환거부 등으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착오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고, 그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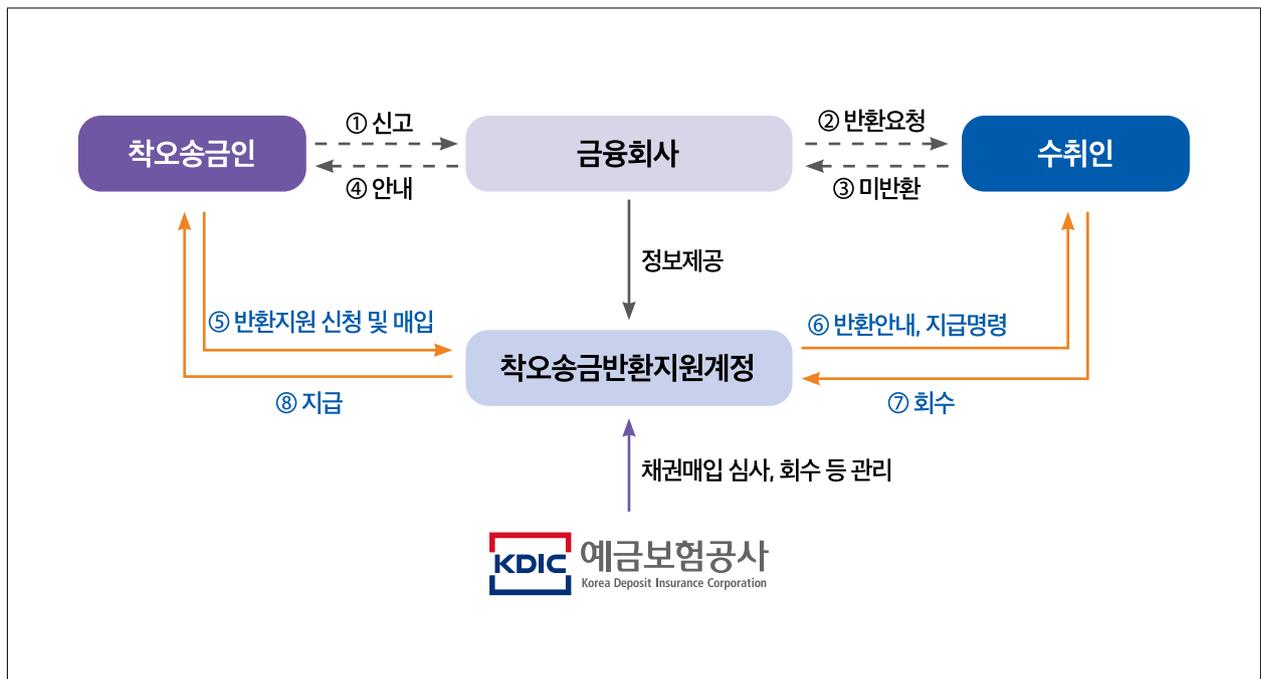
이에 공사는 송금인의 착오로 금융회사,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였다.

공사는 국민참여단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동 제도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제도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 등을 거쳐, 2021년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동 제도는 착오송금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송금인의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행정안전부·통신사·경찰청 등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취득하여 공사가 해당 신청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여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반환절차는 우선, 공사가 수취인에게 우편·전화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하여 자진반환하도록 권유하고,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수취인으로부터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공사는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등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Ⅲ-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 2. 실적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12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총 16,759건(239억원)을 심사하여 7,629건(102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공사는 양수한 채권에 대해 자진반환 권유, 지급명령 신청 등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하여 5,043명에게 착오송금액 60억원을 반환하였다.

**<표 III-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현황**

(2021.7.6~2022.12.31,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건	금액
반환지원 신청 현황	신청 총계	16,759	23,947
	① 지원 대상*	7,629	10,154
	② 심사중	785	1,031
	③ 지원 비대상	8,345	12,762

\* 수취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로부터 수취인 정보 조회 및 검토 후,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도계약 체결

공사가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5,043건 중 4,792건은 자진반환 권유, 251건은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였다. 회수한 착오송금액에서 소요비용을 제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하였으며, 이 때 평균 지급률은 착오송금액의 95.9%이며,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 신청한 날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6.0일이 소요되었다.

**<표 III-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반환 현황**

(2021.7.6~2022.12.31,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건	금액
반환 현황	반환 총계	5,043	6,044
	자진반환	4,792	5,576
	지급명령	251	468

착오송금인이 제도 이용 시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반환받는 것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소송 대비 착오송금인의 경제적 부담은 69만원 이상 경감되고 반환기간은 최소 93일 이상 단축되는 효과로 제도 이용 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착오송금을 반환받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기여하였다.

<표 III-3>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전후 비교

구분	민사소송 (A)	공사 제도 (B)	절감효과 (A-B)
회수비용	약 110만원	약 41만원	약 69만원
반환소요기간	약 139일	약 46일	약 93일

\* 착오송금 1,000만원 기준

\*\* 민사소송에서 회수비용은 소송대리비용, 반환소요기간은 소 제기 후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공사는 제도 운영의 신속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법원·경찰청·더치트 등 외부 사이트 연계 및 방문신청 작성 서류 간소화와 상시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 구축과 함께 주말에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홍보 대상을 세분화하여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표 III-4>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홍보 자료

**외국어 안내자료**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명함형 안내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Misdirected Wire Transfers Recovery Support

www.kdic.or.kr 1588-0037

**KDIC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Misdirected Wire Transfers Recovery Support

- 01 신청대상**
  -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2021.7.6일 이후 송금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금융회사 사전 자금반환청구절차 우선 이행
  - 제외: 사기 등 범죄이용계좌,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
- 02 지원절차**
  - 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후, 자진반환 안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신청인에게 반환
- 03 반환금액**
  - 회수된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 04 신청방법**
  - 온라인 : www.kdic.or.kr
  - 방문 :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 1층

##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

### 1.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제도 개선

금융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2년 3월부터 금융회사 온라인 홈페이지·모바일앱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자보호안내문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가이드라인 마련, FAQ 제공 등을 통해 제도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 결과, 인터넷·모바일뱅킹 서비스를 관리·운영하는 179개 부보금융회사의 온라인 계좌조회화면 등에 예금보호 표시의무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변화를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언론 및 SNS 홍보를 실시하고 안내자료(리플렛) 개편하였다.

또한, 실물자산(부동산, 음원저작권 등)을 작은 단위로 쪼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증권 거래를 위해 증권회사에 별도 예치된 금전이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보호됨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회사 예치금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동 예치금이 예금보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대면 금융거래 일반화, 조각투자 활성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사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사모운용사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지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나, 2019년부터 불완전 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운용상 위법·부당행위 등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었다. 투자자 피해사례 증가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2020년 7월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사모펀드 등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고, 금융감독원 내에 「사모펀드 전담 검사단」을 구성하여 공사에 인력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신속하게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조사·검사 유경험자, 공인회계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6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부실 사모운용사 적시 발견 및 위험 전이 방지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전수점검 조직이 유지되는 2023년까지 인력 파견을 지속할 계획이다.

2019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사모운용사의 부실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부실화된 사모운용사를 관리하고 부실이 심화된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과거 저축은행 등 부실금융회사 경영관리, 청·파산 경험을 살려 2020년 부실이 발생한 2개 사모운용사의 정리 업무(청파산 2개사)를 맡아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0년 6월 금융위원회의 긴급 조치명령으로 경영관리가 개시된 옵티머스자산운용(주)의 경우, 공사는 공사 직원을 경영관리인으로 파견하여 고유재산 등을 관리하며 펀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였다. 경영관리 기간 중 자체조사를 통해 임직원의 부실책임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형사 판결 등을 바탕으로 부실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사무실 이전 등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는 등 투자자 보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2021년 11월말에는 금융위원회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불법 행위를 근거로 금융투자업 등 인가·등록 취소 처분을 부과하면서 공사를 청산인으로 선임함에 따라 공사는 청산 관련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파견하여 재산목록 작성 및 확인, 채권신고공고 등 청산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청산절차 진행 중 채무초과 사유가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에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절차로 이행하였고, 2022년 8월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등록취소에 따른 해산으로 청산 절차를 시작한 라임자산운용(주)에 대해서도 공사는 청산인으로 공사 직원을 파견하여 회사 해산 및 잔여재산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실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재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채무초과를 사유로 2022년 1월 서울 회생법원에 청산인이 파산신청을 한 이후, 2022년 2월 파산 선고가 되었다. 법원은 공사의 파산관재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공사는 사모운용사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서울회생법원의 감독하에 파산 사모운용사 고유계정 자산을 신속하게 환가하여 배당 재원을 활용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표 III-5> 사모운용사 청산 업무 현황**

금융회사명	부과 조치	조치 결정일	청산인 선임일	파산선고일
옵티머스 자산운용(주)	인가 및 등록 취소	2021.11.24.	2021.11.29	2022.8.29
라임 자산운용(주)	등록 취소	2020.12.2.	2020.12.22	2022.2.17

### 3.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개선

「예금자보호법」은 부보금융회사가 평상시 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예금자정보를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로 인하여 은행과 같이 예금자 및 계좌 수가 많은 부보금융회사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IADI(국제예금보험기구) 권고 등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제도」를 2017년부터 도입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2022년에는 저축은행 2개사의 전체 예금자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금지급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예금보험금을 신속·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으며, 인터넷 전문은행 1개사를 대상으로 예금자정보 데이터 정합성을 점검하여 발견된 오류를 개선하는 등 유사시 정확한 보험금 지급 정보가 생성될 수 있도록 시스템 완결성을 기하였다.

**<표 III-6> 신속한 보험금 지급 관련 국제기구 권고 사항**

구분	IADI 핵심준칙 제15조 내용
보험금 지급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금보험기구는 7영업일 내에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야 함</li> </ul>
예금자정보 사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행은 일정 형식으로 예금자정보를 유지·관리해야 함</li> <li>예금보험기구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예금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함</li> </ul>

## 4. 미수령금 지급 노력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개산지급금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예금자의 상당수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으로 파산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찾아가고 있지 않은 미수령금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 구축」하고, 지급대행기관 및 지점을 전국 1,170여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미수령금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금보험금에서 개산지급금 정산금 및 파산배당금까지 미수령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예금자의 최신 휴대전화 번호로 미수령금 보유 사실을 직접 공지하는 「모바일 안내 서비스」 시행을 통해 대국민 안내·홍보를 강화하였다. 한편, 미수령금 찾아주기 서비스의 추진과 관련하여 해외 거주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해외대사관의 공증 절차를 아포스티유\*로 대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거주국가 공증인 공증 등으로 해당국가의 발행문서를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제도

이러한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미수령금 잔액은 미수령금 통합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6년말 128억원에서 2022년말 37.3억원으로 약 90.7억원이 감소하였다.

<그림 III-2> 신문광고, SNS 홍보







# 제4장



##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제1절 부보금융회사 리스크 상시 감시

### 1. 금융회사 리스크 점검

#### 가. 리스크 분석 기반 강화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부보금융회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재무상태 및 보험사고 위험 등을 예측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융권역별 감시단계 분류기준에 따라 개별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감시 수준을 차등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공유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공유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개선 및 역량 강화

공사는 내부 역량강화 프로그램 실시 등 리스크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상치적출, 재무분석 등을 수행하는 「리스크프로파일링시스템(RPS)」 등 리스크 분석시스템에 대한 사내직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2회를 운영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초청 상시감시포럼을 12회 실시하는 등 금융시장 및 금융업권 이해도를 제고하고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심층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보험사고 위험관리 역량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2. 상시 감시 기능 활성화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한 선제적 금융리스크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중 공사 내 리스크 관련 협의체인 상시감시협의회를 금융시장 선제대응단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다. 분기별로 개최되던 회의를 월별로 개최하고, 주재자를 이사에서 부사장으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의 리스크요인, 취약금융회사 중점 모니터링 현황 등을 신속하게 전사적으로 공유·연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당국과의 공조체계는 더욱 긴밀하게 구축되었다.

또한, 공사는 경영·영업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과 부보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에는 러·우 전쟁, 글로벌 통화 긴축 지속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부보금융 회사에 대한 리스크 감시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공사는 선제적 리스크 감시 강화를 위해 '일일 금융시장 동향' 외에도 단기자금시장 경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주간 단기금융시장 동향', 급변하는 시장상황을 적시에 추가 보고하는 '금융현장정보' 등을 통해 주식·외환·채권시장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 및 기준금리 인상 배경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은행업권은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 채무상환 능력, 가계신용대출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한편, 보험업권의 경우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금리 상승 시나리오를 추가하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였으며, PF대출 및 유동성 등 리스크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본적정성 등 재무지표가 취약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경영현황 면담을 실시하여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및 자본확충 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금투업권의 경우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 등 글로벌 긴축 심화와 함께 부동산경기 하락 등으로 단기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증권업권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였다. 특히, 부동산PF 익스포저 및

PF유동화증권 채무보증 현황 등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중점감시 대상 증권사에 대해서는 현장면담을 통해 경영 환경 및 리스크 현황을 확인하는 등 사전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금리인상 및 건설·부동산 경기 둔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통해 취약한 저축은행을 선별하여 밀착 감시를 실시하고, 공동검사 및 경영진 면담 등 현장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 감축에 기여하는 등 부실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아가 공사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등 금융의 디지털전환 확산에 따른 잠재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자 금융산업 경쟁구도 변화 및 시스템 불안요인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디지털 신사업이 도입되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 3. 현장점검

#### 가. 개요

공사는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및 기금 손실 유발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동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단독조사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 경영진과의 면담 등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총 11회, 공사 단독조사 1회를 실시하였으며,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 등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 나. 실효성 제고

공사는 부보금융회사 조사·공동검사 시 부보금융회사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보다는 기금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은행업권의 경우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부동산 경기침체 우려 및 금리인상 기조 지속 등 비우호적 대내외 금융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업 및 가계여신의 건전성 관리, 리스크 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하였다.

보험업권의 경우 자본적정성 관리가 미흡하고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에 대하여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공사는 공동검사를 통해 2023년 新제도 도입(IFRS17, K-ICS)에 대비한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마련,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운영 등 자본적정성 관리 강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식, 구조화 증권 및 PF대출 등 위험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권고하여 부실 사전 예방에 기여하였다.

금투업권의 경우 글로벌 긴축 등 대내외 금융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단기조달 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유동성리스크에 집중한 공동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동성위험 측정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권고하였다. 또한, 비우호적 환경에 따라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PF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관리 등 위험투자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권고하여 사전적인 위험예방에 노력하였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인상에 따라 PF대출 및 브릿지대출의 취급 및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하여 관련 리스크요인 파악 후 이를 저축은행 등에 전달하여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개인신용대출 중 금융플랫폼 연계 대출을 급격히 확대함으로써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취급현황과 자산건전성 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리스크 감축을 유도하였다.

## 4. 금융회사와 소통

### 가. 시장전문가들과의 소통

공사는 금융시장 및 금융업권별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외부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한 분석 수준 제고를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2년 중 주요 정책연구기관의 연구조정실장을 초청하여 리스크이슈를 점검하는 연구조정실장 간담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으며, 업권별로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해 리스크 평가 전문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시장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금융리스크리뷰」를 발간하여 시장참가자들에게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리스크 이슈사항에 대한 연구·분석과 시사점 등을 공유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신지급여력제도(K-ICS),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등 신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과 대응방안 등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원고를 게재함으로써 금융리스크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표 IV-1> 2022년 「금융리스크리뷰」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2022년 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보험회사 자본관리방안</li> <li>• 국민대차대조표를 통해 본 가계자산, 부채 특징과 시사점</li> </ul>
2022년 여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현황 및 개선 방향</li> <li>• 국내 부실정리계획의 승인과 향후 과제</li> <li>• 은행 주주의 이중책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설립</li> </ul>
2022년 가을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자산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li> <li>• 퇴직연금 디폴트옵션과 금융소비자 보호</li> </ul>
2022년 겨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특집&gt; 2023년도 금융시장과 업권별 산업 전망, 리스크 이슈</li> <li>•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li> </ul>

## 나. 부보금융회사와의 교류 강화

2022년 12월 저축은행 임직원, 정책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여한 「제10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동 워크숍에서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이후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대응 전략을 공유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였다.

## 제2절 차등보험료율제도 운영

### 1. 개요

차등보험료율제도는 2009년 2월 「예금자보호법」제30조제1항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업계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한 의견수렴, 평가모형 개발 등을 거쳐 2014년부터 전체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평가가 실시되었다.

차등평가는 평가의 기대효과, 예금보험료 납부규모, 평가 가능 여부 등에 따라 크게 (1)차등모형평가, (2)특정 보험료율 적용 평가, (3)등급 외 적용 평가로 구분된다.

<표 IV-2> 차등평가의 구분

구 분	대 상	평 가 방 법	적 용 요 율
차등모형 평가	특정보험료율 및 등급 외 적용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보금융회사	모형에 의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 (A <sup>+</sup> , A, B, C <sup>+</sup> , C)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요율 적용
특정 보험료율 적용 평가	납부한 예금보험료가 소액 (일천만원이하)인 부보금융회사 등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규정에서 미리 정한 요율 적용
등급외 적용 평가	부실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 중인 부보금융회사 등		규정에서 미리 정한 할증 요율 적용 (+10%)

공사는 차등보험료율을 표준요율을 중심으로 상하 10% 범위에서 할증하거나 할인하여 정하는데, 2022년부터는 평가등급을 3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V-3> 등급별 적용 차등보험료율(금융업권별 표준보험료율\* 대비)

구분	2014~2015	2016	2017~2018	2019~2020	2021	구분	2022~
1등급	-5%	-5%	-5%	-7%	-10%	A+등급	-10%
2등급	0%	0%	0%	0%	0%	A 등급	-7%
3등급	+1%	+2.5%	+5%	+7%	+10%	B 등급	0%
						C+등급	+7%
						C 등급	+10%

\* 은행(0.08%), 보험·금융투자(0.15%), 상호저축은행(0.40%)

## 2. 운영

공사는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284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21 사업연도 차등평가를 실시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 부보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평가 설명회 영상을 제작·배포하며 제도 개편사항에 대한 이해도 및 업계와의 소통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부보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건전경영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차등평가 결과 종합분석보고서를 제공하였다.

또한, 2023년도 실적을 평가할 보완지표를 2022년말에 선정하고 2023년 1월에 통보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연초부터 주요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표 선정 시 내부 유관부서 및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7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표의 투명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공사는 차등평가의 공정성·정확성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2021 사업연도 평가결과 점검을 통해 24개사의 점수 변경 및 2개사의 등급 변경을 확인하여 후속조치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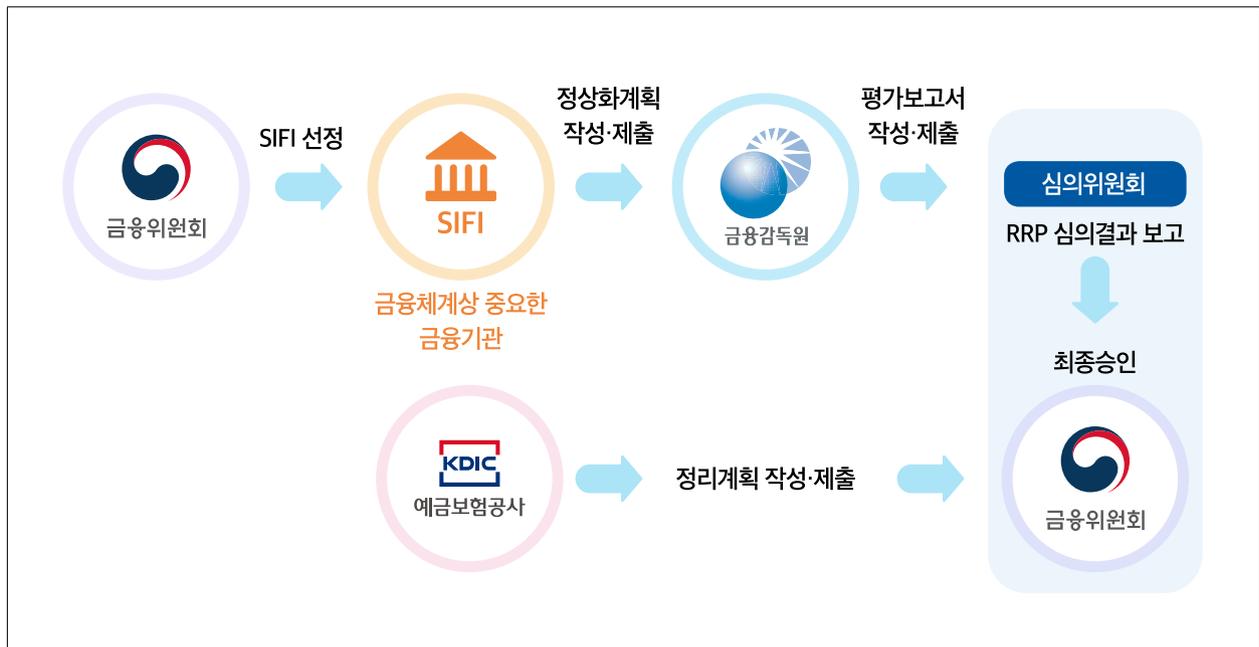
이외에도, 2022년 12월, 매년 부보금융회사 차등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종합인식도 설문조사를 제도 운영 만족도에 중점을 둔 조사로 개편·실시하였다. 특히, 세부 항목별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회사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였고, 설문결과를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 제3절 부실정리계획 수립 및 시행

### 1. 대형금융회사

2021년 6월 30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대형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라 한다)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제도」가 최초 시행되었다. 2022년 4월 공사는 동 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대형금융회사 총 10개(KB·농협·신한·우리·하나지주 및 자은행)에 대한 “2021년도 부실정리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심의결과 부실정리계획이 관련 법령 및 국제기준 등의 수립기준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2022년 6월 22일 동 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그림 IV-1>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 개요



또한, 공사는 2022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 승인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부실정리계획의 완성도 및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 용역결과, 해외사례 등을 부실정리계획에 반영하였다. 또한 공사 내규에 따라 설치·도입된 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하여 부실정리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부실정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부실정리계획의 토대가 되는 부실정리계획 기초자료를 대형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공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대형금융회사 합동워크숍 및 대형금융회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부실정리계획 개선과제와 금융위원회 승인사항을 공유하고 대형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부실정리계획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공사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정리계획 기초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2021년 대비 요청자료를 간소화하였다.

이외에도, 2022년 7월 공사는 정리제도 관련 정보공유 및 해외기구와 공조 확대를 위해 유럽 단일정리위원회(SRB; Single Resolution Board)와 협력협약을 체결하였다. 동 협력협약을 근거로 2022년 12월 SRB 정리 전문가의 공사 내방 워크숍을 실시하여 부실정리계획 수립 노하우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2022년 8월 공사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산하 국제회의체인 정리제도운영그룹(ReSG; Resolution Steering Group)의 정회원에 가입하였고, 2022년 10월 정회원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등 정리당국으로서 공사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공사는 이외에도 다양한 정리 관련 국제협의체\* 등에 참여하여 정리제도 관련 국제논의 및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RRP 제도 관련 해외 사례들을 수집하여 부실정리계획 수립 시 참고하고 있다.

\* 은행 부문 국경 간 위기관리그룹(BankCBCM; Bank 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Group), 국내 진출 글로벌 대형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과 HSBC 은행의 부실에 대비한 위기관리그룹(CMG; Crisis Management Group) 등

공사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RRP)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에 대비하여 금융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리체계 고도화에 필요한 정리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2. 저축은행

2011년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공사는 2013년 하반기 ‘영업 중 제3자 계약이전 방식’을 도입하고 스마일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해솔저축은행,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이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는 예금자의 불편뿐만 아니라, 가교저축은행의 매각·관리 부담을 없애고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조기에 종결하는 정리체계를 정착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부터 2022년까지 새롭게 부실금융회사로 결정된 저축은행은 없었으나, 공사는 부실저축은행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부실저축은행 단계별 정리실행계획’을 정비하였다.





# 제5장

## 부실금융회사 및 파산재단 관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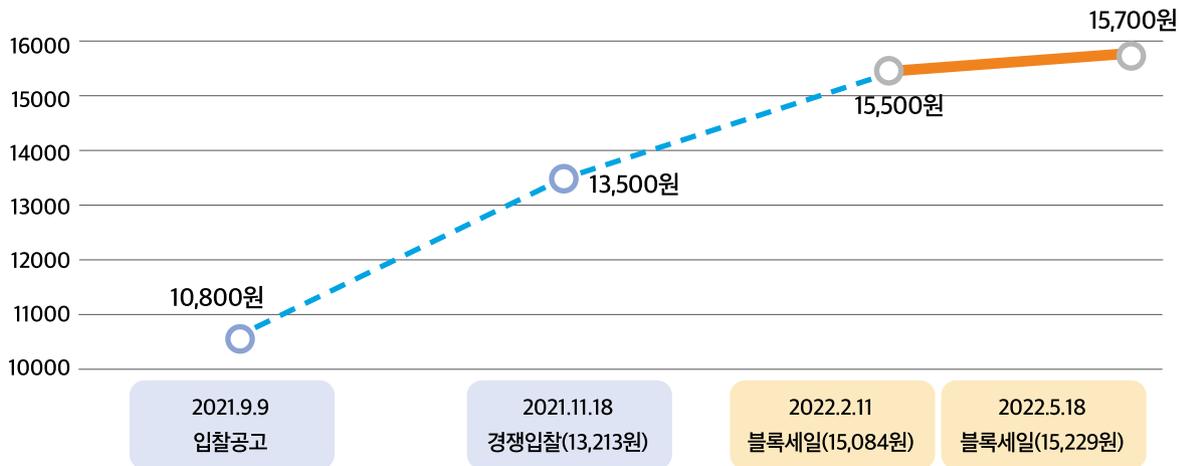


## 제1절 출자금융회사 지분 매각

### 1. 우리금융지주

2021년 블록세일과 희망수량경쟁입찰로 11.33% 매각에 성공하여, 공사의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율이 5.8%로 축소되고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사실상 완전민영화가 달성되었다.

2022년에는 정부보유 디스카운트 해소, 금리인상 등에 따른 영업실적 개선 기대로 주가가 상승기에 있어 잔여지분의 추가이익(Upside-gain) 향유를 위해 잔여지분 매각에 즉시 착수하였다.



이에 2월과 5월에 블록세일로 4.51%를 매각하여 4,981억원을 추가로 회수하였다. 주가 상승기에 매각시기를 적기에 포착하여 2차례 블록세일 모두 이전 매각가 이상으로 매각을 성사하여 공적자금 지원액(12.7조원) 대비 1,009억원을 초과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실상 완전민영화가 달성되어 경영권과 관계없는 소수지분만 남아 있고, 지원 원금 대비 초과 회수된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잔여지분(1.29%)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매각할 계획이다.

## 2. 수협중앙회

공사는 그간 2016년 수협은행 출범 시 체결한 상환합의서에 따라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지원된 공적자금 1조 1,581억원 중 4,007억원을 회수(회수율 34.6%)해 왔으며, 2028년까지 상환이 완료되는 일정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해왔다.

2021년 11월, 수협중앙회가 공사에 현재까지 미상환된 공적자금을 국채로 일시에 상환하겠다는 제안을 함에 따라 공사는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의견을 조율하였다. 이에 수협이 지원받은 공적자금 1조 1,581억원 중 미상환된 잔액 7,574억원을 2022년 중 국채로 일시에 공사에 지급하고, 공사는 2027년까지 국채 만기 도래(2023년~2026년 매년 800억원, 2027년 4,374억원) 시 현금을 수령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 방안은 2022년 5월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다.

이를 위해, 2022년 6월 공사와 수협은 상환합의서를 개정하고, 9월 29일 수협으로부터 국채를 지급받아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이 사실상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 배당금 회수 방식 보다 확실한 현금흐름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수기한도 2028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앞당길 수 있었다. 수협은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본연의 기능인 어업인 지원과 수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해지로 경영자율성이 제고되었다.

## 3. 서울보증보험

공사는 서울보증보험에 지원한 공적자금 10조 2,500억원을 보통주 및 우선주 형식으로 지원한 후, 그간 상환우선주 상환과 유상감자, 배당의 형태로 총 4조 3,484억원을 회수하였다. 다만 배당 위주의 회수방식으로는 상환기금 청산시점인 2027년말까지 회수율을 제고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분매각을 통한 적극적 회수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예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시간이 정해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시점, 서울보증보험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시현하는 등 매각여건이 성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보증보험 지분의 단계적 매각을 추진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할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소수지분 매각을 통해 공사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을 점차 줄이고 향후 원활한 경영권지분 매각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중장기 지분매각 로드맵을 2022년 7월 공자위 의결을 통해 마련하였다.

소수지분 매각은 투자수요 확보, 시장가격 발견을 통한 추가매각 용이성, 우리금융 사례 등을 고려하여 IPO를 통한 구주매출을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IPO를 위한 사전 준비가 진행 중이며, 2023년 중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IPO 이후 2~3년간 예보 보유 서울보증 잔여 소수지분을 수차례에 걸쳐 입찰·블록세일 등 방식으로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보증보험의 업무 성격과 범위, 보증보험산업 관련 정부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권지분(50%+1주) 매각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표 V-1> 매각로드맵 주요 내용

방식	IPO	소수지분 추가 매각	경영권 지분 매각
시기	2023년 상반기	상장 후 2~3년간	향후 검토
물량	10% 이상	최대33.85%(2~3회 분할)	50%+1주 이상

\* 시장상황, 보증보험시장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 관리】

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공적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1999년 이후 총 14개 금융회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였고, 해당 금융회사에 재무비율 목표 및 비재무부문 목표를 부여하여 이를 분기별로 점검해왔다.

2002년 4월 이후 2021년말까지 우리은행 등 12개 금융회사를 매각 또는 합병시킴에 따라 공사는 이들 금융회사와의 MOU를 해지하였다. 2022년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수협중앙회의 국채를 통한 공적자금 상환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채가 납입된 직후인 9월 30일 수협은행과의 MOU를 해지하였다. 2022년말 현재 서울보증보험 1개 금융회사에 대해 MOU 관리를 하고 있다.

2022년 중 공사는 MOU 체결 금융회사의 2021년도 4/4분기(연간)부터 2022년도 3/4분기까지 MOU 이행실적을 점검하였다. 서울보증보험은 2021년도 4/4분기(연간)부터 2022년도 3/4분기까지 MOU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향후에도 공사는 MOU 체결 금융회사의 목표 달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 제2절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 운영

### 1. 현황

「예금자보호법」은 지원자금 등의 효율적 회수를 위하여 공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을 하는 부보금융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말 현재 36개\* 부실금융회사 파산재단에 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공사 직원 29명을 대리인으로 파견하고 있으며, 법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추진함으로써 지원자금 등의 회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 공사 자금이 지원되지 않은 3개(한맥투자증권,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포함

### 2. 자산 매각

#### 가. 자산 현황

2011년 이후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이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모럴해저드 등으로 인해 부실이 심화하여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조치를 함에 따라, 공사는 이들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자산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2022년말 기준 총 2,181억원의 주요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보유한 자산의 경우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건설사업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차명으로 SPC를 설립하고, 이들 SPC에 대출을 실행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거래된 자산이 많았다. 따라서, 각 자산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인과의 법률분쟁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미술품 및 고가의 외제차량 등 종류도 다양하여 자산가치 유지를 위해 이들 자산을 특성에 따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2부(회수기획부, 해외재산조사부), 1사무소(프놈펜 사무소)로 개편·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외재산조사부는 해외재산 조사·회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9년 1월 부터 운영 중인 전담조직으로서 현지 사업장 특성에 따른 중재, 협상 및 범정부적 외교적 협의 등 다각적 회수방안을 추진 중이다.

<표 V-2> 저축은행 파산재단 주요자산 유형별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개)

구 분	파산 당시 관리대상 건수	대출잔액	미매각 자산 유효담보가
PF부동산	758	74,240	1,618
선 박	16	2,813	-
주 식	23	2,747	-
해외자산	37	3,406	559
미술품 등 기타	5	12	4
합 계	839	83,218	2,181

자산 관리 전담부서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시점부터 자산 관련 대출의 취급과정, 권리관계 분석 및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거쳐 자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자산가치 저하요인을 분석하고 가치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인·허가 및 사업권 만료 임박 등 가치 저하가 예상되는 자산에 대한 회수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자산별 특성에 부합되는 매각전략을 수립하여 회수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V-1> 자산유형별 관리형태



## 나. 자산 회수 체계

공사는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해당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시점부터 자산 매각이 완료되기까지 외부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회사 영업정지 시 우선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한 후,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산별 특성에 맞는 매각방안 등 회수전략을 수립한다. 이어서 대상자산에 대한 매각공고 및 입찰실시 등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매각완료 자산에 대한 입금관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4단계의 회수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림 V-2> 4단계 자산 회수관리 체계



또한, 조사결과 분류된 자산을 특성에 따라 그룹별로 유형화하고, 각 자산별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집중도 및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회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자산 매각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계, 법률 및 회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자산회수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022년도에는 총 6회 개최하여,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중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 【해외자산(캄코시티사업) 환수를 위한 대외 협력체계 구축】

공사는 대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자산에 대한 회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해외 소재 자산의 경우 공사 단독의 노력으로는 회수에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 국회, 정부 등 대외기관은 물론 자산 소재국 정부와의 협력이 요구되었다.

특히, 해외소재 자산 중 최대 규모인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의 재개를 위해 국내 정부부처·기관과 협업하고, 나아가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과거 부산계열저축은행이 대규모로 투자한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성과로는 양국 정부 간의 「한·캄 캄코시티 TF」의 구성과 성공적 운영을 꼽을 수 있다. 2019년도 11월 정부대표단의 캄보디아 정부 방문면담을 통해 물꼬를 튼 양국 정부 차원의 캄코시티 협력 모멘텀은 동 TF를 통해 구체화하였으며, 그 결과 양국 정부는 2020년 12월 공동TF 구성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한·캄보디아 TF 출범 직후, 2021년 1월 한·캄 TF 1차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자들은 TF 운영방향과 정보공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2021년 6월에는 실무 차원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측 요청 정보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한 제공 의사를 재확인하고, 세부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양국 간에 대면회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2022년 1월 한국 측 TF 대표인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명의로 정보공유를 촉구하는 공한을 캄보디아 정부에 송부하였으며, 2022년 6월에는 금융위원회를 통하여 캄보디아 정부에 캄코시티 부동산 관련 세부 질의와 함께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등 정보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또한, 외교채널을 통한 캄보디아 정부와의 접촉과는 별도로 2022년 9월 1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 공사 사장 간 면담을 실시하여 공사와 캄보디아 정부 간 직접 소통 가능한 Hot Line을 구축하였고, 2022년 12월 21일 한·캄 TF의 캄보디아측 대표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사무총장과 공사 본부장간 면담을 실시하여 향후 캄코시티와 관련한 양 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공사는 금융위, 외교부 등 국내 유관부처 및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기에 TF 또는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캄보디아 캄코시티 정보공유 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캄보디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잔여 소송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한국과 캄보디아 양 국이 Win-Win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채권회수를 통한 부실저축은행 피해 예금자 구제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다. 회수 실적

공사는 이와 같은 자산 회수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회수노력을 전개한 결과 2011년부터 2022년말까지 총 5조 6,444억원을 회수하였다. 2022년에는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PF사업장의 매수세 감소에 따라 기존 단순 공·경매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공탁금 재산정, 대위변제 등 회수방식을 다각화하여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회수를 추진하였다.

2022년의 대표적 자산 매각사례로는 울산 울주군 굴화리 아파트신축사업 및 용인 이동면 송전리 도시개발사업이 있다. 울산 사례에서 관할법원은 주택조합이 납부한 가압류 해방공탁금 135억원에 대하여 다수 채권자들의 압류 중첩을 이유로 배당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공사는 他채권자들과 1년여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압류 해지 및 배당절차 진행에 대한 최종 동의를 도출하였고, 기존의 배당안보다 6.4억원 상향된 109.4억원의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용인 사례에서는 담보 토지 경매를 반대하는 토지주 조합의 지속적인 소송·민원으로 담보물 매각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다. 공사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단순 경매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주택조합에 대한 대위변제 요청 등 회수방식을 다각화함으로써 집단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파산재단 대출액 422억원 대비 127% 초과한 535억원을 최종 회수할 수 있었다.

<사진 V-1> 2022년 주요 매각 자산



<표 V-3> 파산재단 주요자산 유형별 회수 실적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회수 금액											
	2012년 이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PF부동산	1,737	3,529	9,522	10,516	4,829	5,408	3,863	4,446	1,311	2,267	636	48,064
선 박	223	661	870	1,200	152	-	-	-	-	-	-	3,106
주 식	838	641	214	183	1	10	16	16	-	-	4	1,923
해 외 자산	734	158	357	88	72	576	345	2	-	10	-	2,342
미술품 등	53	49	86	161	116	121	104	254	22	26	17	1,009
합 계	3,585	5,038	11,049	12,148	5,170	6,115	4,328	4,718	1,333	2,303	657	56,444

### 3. 채무조정

공사는 2001년부터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재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산 및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2022년에는 분할상환 채무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종료예정이었던 특별상환유예와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대상 한시적 추가 감면 기한을 각 1년 연장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급격한 금리인상 시기 속에서 채무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시이자율 부담을 완화하였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미취업 청년 감면을 상향, 영세자영업자를 신규 취약계층에 산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취약계층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통해 2022년도에 11,149명의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이들에게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공사는 회수가 불투명한 장기 연체 채권 355억원을 조기 회수하였다.

**<표 V-4> 채무조정 제도 개선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채무 조정	코로나19 피해자 감면기간 연장	•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추가 감면을 2023.12.31까지 1년 연장
	코로나19 관련 특별상환유예 연장 실시	• 분할상환 중인 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환유예를 최대 1년간 연장
	사회소외계층 감면율 상향 및 범위 확대	•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최대 감면율 적용 • 영세자영업자를 신규 사회소외계층으로 편입하여 감면율 상향 적용
	채무자 부담 완화	• 고시이자율을 직전 분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

## 4. 법적 종결

### 가. 현황

공사는 파산기간이 장기화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잔여자산을 평가·매각하여 최후배당을 실시한 후 법적 종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파산재단을 조속히 정리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고 있다.

2022년말 현재 492개 파산재단 중 456개 파산재단이 법원으로부터 종결선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36개 파산재단 중에서도 파산기간이 장기화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법적 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파산재단이 법적으로 종결된 이후에도 각 지역통할책임자를 통해 관련 민원 안내 및 법률관계 정리 등 법적 종결 파산재단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V-5> 파산재단 종결 및 진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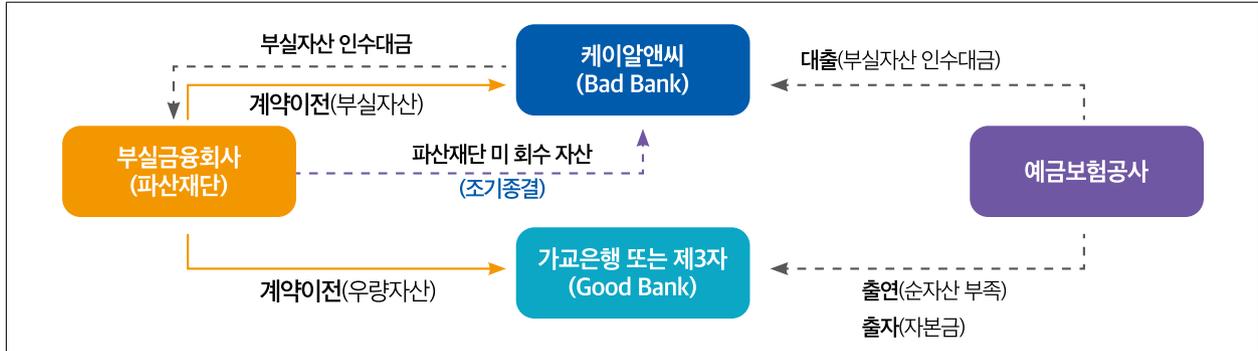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 %)

구 분		은행	보험	금융투자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 계
총 파산재단 (A)		5	11	8	22	121	325	492
종결	종결재단 (B)	5	10	5	22	89	325	456
	종결율 (B/A×100)	100	91	63	100	74	100	93
진행재단 (A-B)		0	1	3	0	32	0	36

### 나. 잔여재산 매각 및 사후관리

파산재단은 시장에서 매각되지 않은 부실금융회사의 자산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회사(케이알앤씨 : KR&C)에 매각하고 종결을 추진한다.

<그림 V-3> 케이알앤씨(KR&C)의 업무



<표 V-6> 2022년 중 케이알앤씨(KR&C) 인수자산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피인수기관	채권액	인수액	비고
으뜸저축은행 등 8개 재단	4,405	27	-

2022년에 케이알앤씨(KR&C)는 8개 파산재단(으뜸, 경은, 도민, 한주, 골든브릿지, 중앙부산, 파랑새, 전일)으로부터 4,405억(인수액 27억원)의 잔여자산을 인수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2년말 기준으로 케이알앤씨(KR&C)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자산의 잔액은 채권액 기준 7조 1,196억원이고, 이 중 1,507억원은 케이알앤씨(KR&C)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6조 9,689억원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유자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출채권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추심·채무조정 및 매각을 통해 회수하고 있고, 유가증권 및 부동산 등은 정기 합동공매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표 V-7> 케이알앤씨(KR&C) 보유자산(잔액)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직접관리	외부 위탁관리	합계
대출채권	439	69,689	70,128
유가증권	445	-	445
부동산등	623	-	623
합계	1,507	69,689	71,196

\* 손해배상채권 등 제외 기준



# 제6장

## 부실책임 추궁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제1절 부실금융회사

### 1. 조사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조사하고, 당해 부실금융회사 등에 위법·부당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 부실금융회사 등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에 의한 업무집행 지시자,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및 기타 제3자

2008년 3월 공사는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 간의 고도로 밀착된 불법행위에 대한 유기적 연계조사를 위하여 부실금융회사 조사를 담당하던 '구 조사부'와 부실채무기업 조사를 담당하던 '구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을 통합하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1국 2부 1사무소로 조직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검찰 등 유관기관 수견 인력을 포함하여 2022년말 현재 총 8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수견 직원의 전문성 및 정보력 등을 활용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으로부터 조사자료 등을 제공받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조사결과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융부실책임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부실책임을 확정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저축은행 대규모 부실과 보험회사 영업정지 발생 등 복잡·다양해지는 부실책임 심의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금융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부실책임심의 결과 2022년말 현재 공사는 총 519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 임직원 6,122명에 대한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실금융회사와 그 파산재단에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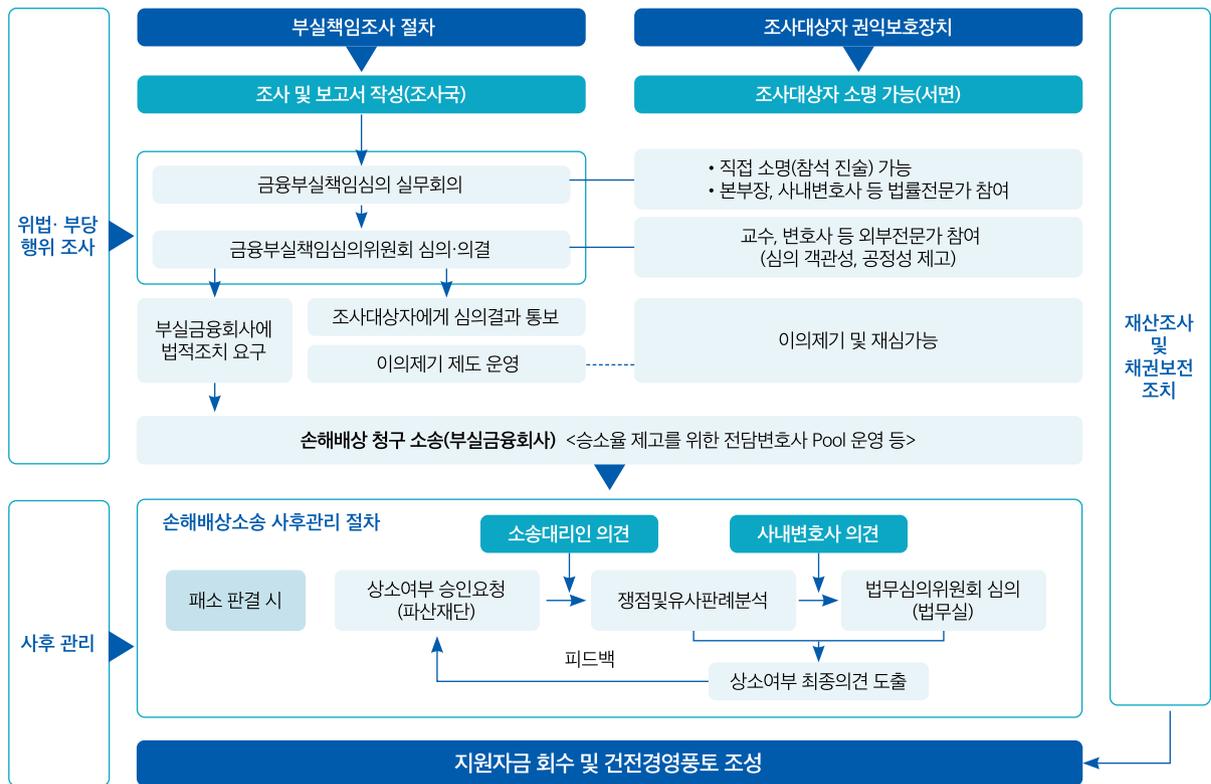
<표 VI-1> 부실금융회사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 현황(누계)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 명)

구 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		합 계	
	부실금융회사 (A)	부실관련 임직원 (B)	부실금융회사 (C)	부실관련 임직원 (D)	부실금융회사 (A+C)	부실관련 임직원 (B+D)
은 행	15	191	-	-	15	191
금융투자	6	65	-	-	6	65
보 험	18	244	1	6	19	250
종합금융	22	160	-	-	22	160
저축은행	86	789	46	521	132	1,310
신 협 <sup>1)</sup>	325	4,146	-	-	325	4,146
합 계	472	5,595	47	527	519	6,122

주: 1) 2010년 1월 1일 신협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협 파산재단은 관련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그림 VI-1> 부실책임조사 절차 및 조사대상자 권익보호제도



## 2.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는 2000년 1월 21일 조문이 신설된 이후 부실관련자의 범위 명시, 조사방법 및 절차의 구체화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이 있었으며, 2015년 12월 22일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단순히 예금보험기금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실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있는 자에게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써 그 의의가 있다.

공사는 2022년말까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9,013명에 대해 1조 8,11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 이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마무리되었으며, 부실관련자의 책임재산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최대한 회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VI-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투입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 명, 억원)

구 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탁 <sup>1)</sup>	합 계
부실금융회사수	15	6	18	22	85	311	457 <sup>3)</sup>
피 고 수	191	83	276	181	1,026	7,256	9,013
소송청구액	1,004	342	2,435	3,048	5,433	5,856	18,118
승 소 액	476	218	1,346	548	4,056	3,208	9,852
회 수 액 <sup>2)</sup>	102	54	218	660	923	769	2,726

-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14개 신탁 파산재단은 관련 통계에서 제외  
 2) 승소액 중 법원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실제 회수된 금액  
 3) 자진변제, 면책 등의 사유로 조사 완료 후 소송 미제기한 15개 회사 제외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도 부실금융회사 및 그 파산재단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말까지 47개 부실금융회사 부실관련자 702명에 대해 4,62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표 VI-3> 예금보험기금 투입 부실금융회사 관련 소송제기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 명, 억원)

부실금융회사수	피 고 수	소송청구액	승 소 액	회 수 액 <sup>1)</sup>
47	702	4,625	2,704	1,282

주 : 1) 승소액 중 법원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실제 회수된 금액

공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목적은 부실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을 통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풍토를 조성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투입된 지원자금을 최대한 회수하는데 있다. 공사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절차는 소송제기 전 집행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절차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절차 및 회수절차인 집행절차 3단계로 이루어지며,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우선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하고, 자금흐름조사 등 다양한 입증 수단을 활용하는 등 체계적으로 변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승소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제2절 부실채무기업

### 1. 조사

공사의 '구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채무 기업에 대한 조사를 2006년말까지 마무리하고, 2007년부터 예금보험기금이 지원된 저축은행의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부실금융회사 조사 전담부서인 '구 조사부'와 통합,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조직을 개편 하였으며, 2013년에는 부실채무기업 전담부서인 기업조사국(현 조사국)을 신설하여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금융 부실책임 조사를 강화하고, 책임재산 확보 등을 통해 채권회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부실채무기업 관련 위법·부당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금융부실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022년말 현재 891명에 대해 부실책임을 확정하여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부실금융회사와 그 파산재단에 통보하였다.

**<표 VI-4> 부실채무기업 관련 심의 현황(누계)**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 명)

부실채무기업 수	부실관련자 수
385	891

## 2.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사는 부실금융회사 및 그 파산재단에 부실채무기업의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2022년말까지 부실관련자 1,194명에 대해 9,83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부실채무기업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부실관련자의 책임재산 유무, 승소가능성 및 회수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표 VI-5> 부실채무기업 관련 소송제기 현황(누계)**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 명, 억원)

부실채무기업수	피 고 수	소송청구액	승 소 액	회 수 액 <sup>1)</sup>
155	1,194	9,831	4,495	1,188

주 : 1) 승소액 중 법원 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실제 회수된 금액

## 제3절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 1. 국내 재산 조사

공사는 자금을 지원한 부실금융회사(파산재단 포함)의 부실관련자가 보유하거나 제3자에게 은닉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추적·환수하는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을 통해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 및 부보금융 회사의 건전 경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법」상 보장된 ‘자료제공요구권’을 활용하여 법원행정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예보법 개정을 통해 부실관련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권의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그 권한을 상시화하여 부실책임추궁업무 및 지원자금 회수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2년에는 재산발견 가능성이 높은 조사항목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부실관련자의 국내재산 266억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2년 12월말까지 총 1조 4,511억원을 회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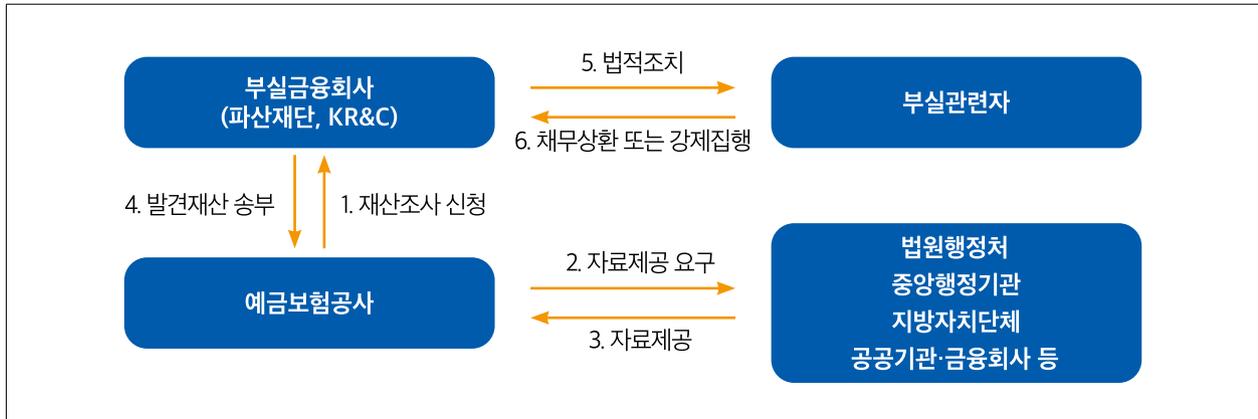
한편, 공사는 2019년말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와 그 활용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된 이의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 회계,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2022년에 위원회에서 재산조사 계획 및 그 결과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의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권익보호 및 재산조사업무의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하였다.

**<표 VI-6> 국내재산 회수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연도	2003~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금액	11,347	1,257	290	291	302	330	428	266	14,511

<그림 VI-2> 국내재산조사 업무흐름도



## 2. 해외 재산 조사

공사는 2002년부터 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재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 9월부터 「해외재산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재산조사 대상국을 확대하는 등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사는 2022년까지 56개국 해외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대상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채무자별 재산조사 방법 다각화 및 조사항목 확대 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부실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 힘입어 공사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도, 2022년 중 해외재산 보유 정황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해외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미국 등 7개국에서 미화 약 4,579천달러(약 60억원) 상당의 해외재산을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외은닉재산의 은닉수법 고도화와 더불어 재산의 은닉국가 역시 기존의 북미, 호주, 유럽에서 남미, 동남아시아 등 제3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업무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중 공사는 회수업무 대상 국가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소재 국가로 확장하였다. 남미 주요국의 사법체계 및 민사법에 관한 전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업무 담당자의 현지 법제 이해도를 제고하고 효과적인 회수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남미 지역 회수 극대화를 위하여 현지 소송대리인과 유기적인 소통 및 국내외 법령, 집행권원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성공적인 회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해외은닉재산 회수업무 효율화를 위해 소송 대상 개별 채무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시, 중점, 특수 유형 분류로 맞춤형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 회수 진행 건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Review를 통해 전략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다변하는 상황에 최적화된 전략을 유연하게 마련하는 등 회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2년에는 부실관련자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 중 731천달러(약 9.5억원)를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표 VI-7> 해외재산 회수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천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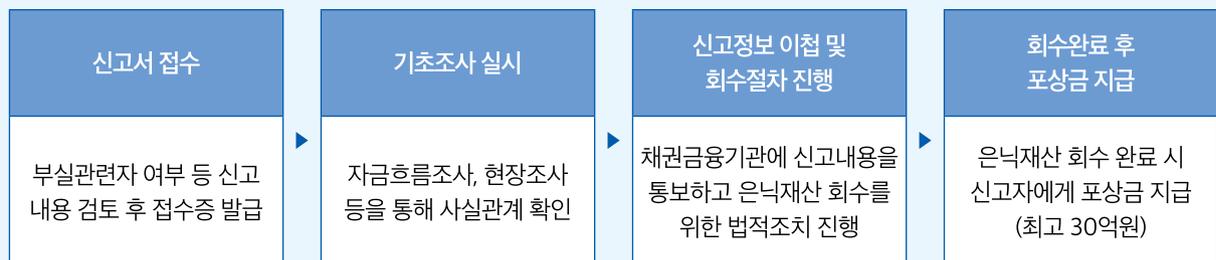
연도	2003~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금액	24,142	6,250	1,496	1,595	1,988	1,569	527	731	38,298

###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의 운영】

공사는 지원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재산조사로는 파악이 불가능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국민의 신고를 통해 확보하고자 2002년 5월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이하 '은닉재산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은닉재산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에 대한 자금흐름조사 등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회수실익이 있는 신고정보를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후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통해 회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은닉재산 신고센터 업무흐름도>



회수절차가 완료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회수기여도 평가를 거쳐 포상금을 산정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채권금융기관) 관할 법원이 포상금액을 결정해서 지급을 허가하고 있다.

공사는 2022년말까지 총 439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그 중 104건에 대해 826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총 55억원을 지급하였다. 향후에도 공사는 신고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신고가 회수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02~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접수건수	311	37	25	22	16	10	7	11	439
회수건수	56	9	11	9	7	4	4	4	104
회수금액	36,178	6,773	7,780	10,190	10,509	1,522	6,919	2,736	82,607

## 제4절 제도 개선

### 1. 조사 대상자 권익보호

공사는 부실책임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책임 현장조사 착수 시부터 향후 조사 진행과정과 각 과정별 소명 또는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부실책임 심의 단계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022년에는 부실책임조사의 공정성 제고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부실책임조사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조사원 복무 수칙” 및 「피조사자 권익보호제도 안내문」을 개정하여 조사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기피 제도를 도입하였다.

**<표 VI-8> 제척·회피·기피제도 비교**

구 분	제 척	회 피	기 피
근 거	조사원 복무 수칙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사 유	친족관계	사적이해관계	
절 차	별도 절차 불요	조사자의 신청	피조사자의 신청
효 과	당연 직무배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직무배제 등 조치	

## 2. 조사역량 강화

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 등장 및 금융의 디지털화라는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가상자산 관련 채권보전조치, 회수절차 이해 등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공사 업무에 도입 가능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국세청 전문가를 초청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산은닉행위 추적, 환수 사례”를 주제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실금융회사 발생에 대비하여 효율적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해 자료제공요구 대상 기관 확대, 부실책임조사 대상 범위 및 조사 권한 확대 등 예보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 및 금융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부실책임조사를 위한 자료제공요구 관련하여서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까지 그 요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부실관련자 권익 보호 및 국민참여 강화를 위해 공사 홈페이지 내 부실책임추궁 관련 판례 검색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기적으로 판례를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현재 업무관련 주요 판결 307개를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 제7장



## 기금 관리 및 결산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제1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002년 정부가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이하 ‘상환대책’이라 한다)에 따라 2003년 1월 1일,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분리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으로 이관하였다. 동 기금은 금융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공적자금 회수 및 상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2003년부터 수납하는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2003년 이후에 발생하는 보험사고 등에 관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1. 기금 조성

상환기금은 특별기여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 발행),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특별기여금(「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 총 2조 3,750억원만 수납하였으며 그 외 타 자금 전입실적은 없다.

<표 VII-1> 금융권역별 특별기여금요율

구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요율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5/10,000 <sup>1)</sup>

주 : 1) 2007년부터 신협의 특별기여금요율이 1/1,000에서 5/10,000로 변경

&lt;표 VII-2&gt; 금융권역별 특별기여금 수입

(단위 : 억원)

연도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종합금융	저축은행	신협 <sup>1)</sup>	합계
2003	4,775	156	889	185	21	222	-	6,247
2004	4,956	168	978	198	6	264	-	6,570
2005	4,872	145	1,069	219	5	319	-	6,628
2006	4,987	151	1,160	242	6	370	216	7,133
2007	5,027	156	1,265	278	7	430	116	7,280
2008	4,976	185	1,364	319	8	491	129	7,472
2009	5,965	169	1,430	352	10	593	137	8,656
2010	6,811	213	1,534	409	19	715	170	9,871
2011	7,789	227	1,650	487	12	718	205	11,087
2012	8,518	226	1,760	592	10	521	228	11,855
2013	8,973	202	2,297	707	9	394	248	12,830
2014	9,590	200	2,386	790	7	323	263	13,560
2015	9,786	179	2,617	896	7	308	275	14,068
2016	10,664	240	2,835	1,001	8	348	299	15,394
2017	11,344	272	3,068	1,103	10	403	332	16,531
2018	12,011	300	3,133	1,197	11	469	-	17,121
2019	12,566	307	3,228	1,281	12	539	-	17,933
2020	14,100	305	3,384	1,361	14	585	-	19,748
2021	15,681	538	3,436	1,449	17	651	-	21,772
2022	17,084	755	3,584	1,519	22	786	-	23,750
합계	180,473	5,095	43,066	14,582	221	9,448	2,617	255,502

주 : 1)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납부

## 2. 기금 지원

공사는 상환기금을 통해 예금보험금의 지급,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자금 지원을 하였으며, 2022년 중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2022년말까지 공적자금 형태로 상환기금에서 부보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지원된 자금은 총 110조 8,946 억원이다. 이 중 부보금융회사의 파산 등에 따른 예금보험금 지급으로 30조 3,124억원(27.3%),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로 50조 7,937억원(45.8%), 계약이전 등에 따른 출연으로 18조 6,117억원(16.8%), 기타 자산매입 등으로 11조 1,767억원(10.1%)이 지원되었다.

2022년 중 상환기금부담으로 부보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표 VII-3> 상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sup>1)</sup>	대 출	예금보험금 지급 <sup>1)</sup>	합 계
은 행	222,039	139,189	81,064	-	-	442,292
금융투자	99,769	4,143	21,239	-	113	125,264
보 험	159,198	31,192	3,495	-	-	193,885
종합금융	26,931	7,431	-	-	182,718	217,080
저축은행	1	4,161	-	5,969	72,892	83,023
신 협	-	-	-	-	47,402	47,402
합 계	507,937	186,117	105,799	5,969	303,124	1,108,946

주 : 1) 정리금융회사를 통한 지원 포함

## 【상환기금의 조성】

### I. 특별기여금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특별기여금으로 공사에 납부해야 하며, 현재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다.

### II.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

공사는 상환대책에 따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총 52조 3,064억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2007년 이후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추가 출연금을 지원받지 않고 있다.

### III.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 발행)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채권(이하 '예보채'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1998년 이후 2002년까지 총 87조 1,599억원의 예보채를 발행하였다. 2003년도 상환기금 설치에 따라 2002년말 예보채 잔액 80조 9,744억원이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그 이후 만기도래하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보채는 상환대책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라 한다)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특별기여금 및 기타 회수 자금 등으로 2008년까지 전액 상환하였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발행 예보채 상환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액
1998	210,150	-	210,150
1999	224,849	-	434,999
2000	89,407	-	524,406
2001	310,593	14,640	820,359
2002	36,600	47,215	809,744
2003	-	97,371	712,373
2004	-	166,227	546,146
2005	-	180,904	365,242
2006	-	190,636	174,606
2007	-	60,672	113,933
2008	-	113,933	-
합계	871,599 <sup>1)</sup>	871,599	-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 IV.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공사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예보채 원리금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에 따라 상환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2021년 중 상환대책에 따른 기금부채를 전액 상환 완료하였으며, 2021년부터 기금 설치 이후 최초로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 상환기금으로 전출\*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였다.

\* 상환기금 청산(2027년말) 전이라도 잔여재산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법」 개정(2020년 12월), 2021년 1.25조원, 2022년 2.4조원 전출 완료

##### <상환기금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액
2004	65,000	-	65,000
2005	74,400	-	139,400
2006	28,705	3,155	164,950
2007	27,200	450	191,700
2008	88,000	100	279,600
2009	58,600	65,000	273,200
2010	68,100	74,400	266,900
2011	7,800	37,300	237,400
2012	47,700	56,900	228,200
2013	72,700	75,700	225,200
2014	10,100	50,100	185,200
2015	8,800	46,900	147,100
2016	19,700	41,300	125,500
2017	15,200	43,900	96,800
2018	14,800	53,100	58,500
2019	-	19,700	38,800
2020	-	24,000	14,800
2021	-	14,800	-
2022	-	-	-
합계	606,805	606,805	

## V.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 및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기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2년까지 재정용자 특별회계,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부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하였다

### <상환기금 차입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도	차입 금액				상환금액	잔액
	부보금융회사	차관 <sup>1)</sup>	재정용자 특별회계	소계		
인수액	76,011	-	-	76,011	-	76,011
1998	3,295	2,416	10,582	16,293	9,337	82,967
1999	13,870	12,016	26,254	52,140	33,870	101,237
2000	90,028	13	39,533	129,574	9,802	221,009
2001	-	8	49,672	49,680	110,196	160,493
2002	-	-	59,553	59,553	3	220,043
2003	-	-	-	-	195,993	24,050
2004	-	-	-	-	11,168	12,882
2005	-	-	-	-	3,538	9,344
2006	-	-	-	-	1,168	8,176
2007	-	-	-	-	1,168	7,008
2008	-	-	-	-	1,168	5,840
2009	-	-	-	-	1,168	4,672
2010	-	-	-	-	1,168	3,504
2011	-	-	-	-	1,168	2,336
2012	-	-	-	-	1,168	1,168
2013	-	-	-	-	1,168	-
합계	183,204	14,453	185,594	383,251	383,251	-

주 : 1) IBRD, ADB 차관자금 등

그러나 2003년 상환기금 설치로 기존 차입금 잔액은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재정용자 특별회계 차입금 전액은 2003년 1월 1일자로 상환의무가 면제되었다. 2003년 이후에는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한 신규 차입은 없고, 2013년에 세계은행(IBRD) 차관의 원금 1억불(1,168억원)을 마지막으로 상환하여 2022년말 현재 차입금은 없다.

### 3. 지원자금 회수

#### 가. 개요

공사의 공적자금 회수방법은 그 지원방법에 따라 다르다. 먼저 부보금융회사에 출자한 자금의 경우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부보금융회사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예금대지급·출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공적자금의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파산한 부실금융회사 등에 대해 지원된 것이므로 파산한 부실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공사가 직접 파산채권자로 참여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가 이루어진다. 끝으로 공사가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 및 부보금융회사에 대출한 자금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회수함으로써 공적자금이 회수된다. 공사는 2022년에 8,467억원을 회수하고, 2022년말까지 총 62조 2,855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VII-4> 상환기금의 회수(2022년)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자산 매각 <sup>1)</sup>	대출금회수	파산배당금 <sup>1)</sup>	합 계
은 행	5,737	-	396	-	-	6,133
금융투자	-	-	1	-	-	1
보 험	2,150	0	-	-	-	2,150
종합금융	183	-	-	-	-	183
저축은행	-	-	-	-	-	-
신 협	-	-	-	-	-	-
합 계	8,070	0	397	-	-	8,467

주: 1) 케이알앤씨(KR&C)를 통한 회수 포함

**<표 VII-5> 상환기금의 회수(누계)**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출자금 회수	출연금 정산 등	자산 매각 <sup>1)</sup>	대출금회수	파산배당금 <sup>1)</sup>	합 계
은 행	236,496	702	67,063	-	18,472	322,733
금융투자	12,121	3,375	18,015	-	78	33,589
보 험	68,823	888	2,453	-	4,310	76,474
종합금융	3,305	59	-	-	93,391	96,755
저축은행	-	343	-	5,969	52,760	59,072
신 협	-	4	-	-	34,229	34,233
합 계	320,745	5,371	87,531	5,969	203,240	622,855

주: 1) 케이알앤씨(KR&amp;C)를 통한 회수 포함

**나. 보유주식의 매각 등****(1) 은행**

공사는 2022년 중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4.51%를 매각하여 4,809억원(은행계정 보유지분 해당액)을 회수하였으며, 배당금 319억원(은행계정 보유지분 해당액)을 수령하였다.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우선주는 609억원은 소각을 통해 회수하고, 이후 잔여 우선주는 교환거래를 통해 전량 매각, 공정가치 6,362억원의 국채로 수령하였다. 동 국채는 연도별(2023년~2027년) 만기 도달 시 원금을 현금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2) 보험회사**

공사는 2022년 중 서울보증보험 배당금으로 2,150억원을 수령하였다.

**(3) 종합금융회사**

공사는 2022년 중 우리금융지주 보유지분 4.51%를 매각하여 172억원(종금계정 보유지분 해당액)을 회수하였으며, 배당금 11억원(종금계정 보유지분 해당액)을 수령하였다.

**다. 대출금 회수 등**

공사는 2022년 중 현대생명보험 계약이전 관련 출연금 정산 등으로 0.01억원을 회수하였다.

## 제2절 예금보험기금

### 1. 기금 조성

#### 가. 예금보험료

부보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금 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수입보험료의 산술평균)의 일정 비율을 예금보험료로 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은 매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그 밖의 부보금융회사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6월 이내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표 VII-6> 금융권역별 예금보험료율

구분	은행	금융투자	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8/10,000	15/10,000 <sup>1)</sup>	15/10,000	15/10,000	40/10,000 <sup>2)</sup>

주 : 1) 2007년부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는 투자자예탁금에 대하여 예금 보험료율 30% 인하  
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예금보험료율 변경(기존 35/10,000)

&lt;표 VII-7&gt; 연도별·계정별 예금보험료 수입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연도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sup>2)</sup>	합계 <sup>4)</sup>
2003 <sup>1)</sup>	4,775	312	2,580	535	73	668	-	8,942
2004	4,960	336	2,832	571	17	793	-	9,509
2005	4,869	300	3,109	628	15	974	-	9,895
2006	4,987	303	3,362	697	19	1,116	-	10,484
2007	5,027	256	3,654	801	22	1,306	-	11,066
2008	4,808	305	3,934	918	24	1,483	-	11,472
2009	5,291	276	4,097	1,016	29	1,737	-	12,446
2010	5,451	284	2,609	698	34	2,524	-	11,600
2011	4,795	283	2,362	700	18	2,332	1,742	12,231
2012 <sup>5)</sup>	3,748	2	-14 <sup>3)</sup>	100	8	1,345	5,816	11,004
2013 <sup>5)</sup>	3,948	-	221	488	8	253	6,672	11,590
2014 <sup>5)</sup>	4,197	-	811	445	6	256	6,158	11,872
2015 <sup>5)</sup>	4,369	-	1,280	710	4	64	7,120	13,547
2016 <sup>5)</sup>	4,675	-	1,857	806	7	296	6,823	14,463
2017 <sup>5)</sup>	5,005	-	2,349	883	9	286	8,242	16,774
2018 <sup>5)</sup>	5,250	-	2,466	973	9	139	9,102	17,940
2019 <sup>5)</sup>	5,342	39	2,426	1,018	10	248	9,360	18,443
2020 <sup>5)</sup>	5,942	0	2,109	1,030	11	216	10,259	19,567
2021 <sup>5)</sup>	6,641	165	914	1,093	14	253	11,267	20,347
2022 <sup>5)</sup>	6,946	456	826	1,159	18	211	12,473	22,090
합계	101,025	3,318	43,784	15,269	355	16,498	95,036	275,284

주 : 1)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 설치(2026년말까지 준치 예정)

3) 2012년 이전에 납부한 예금보험료에 대한 환급

4) 2010년 1월 1일자로 신흥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5) 목표기금제도에 따라 2012년(금투·생보 면제, 손보 15% 감액), 2013년(금투 면제, 생보 45% 감액, 손보 7% 감액), 2014년(금투 면제, 생보 38% 감액, 손보 1% 감액), 2015년(금투 면제, 생보 17% 감액), 2016년(금투 면제, 생보 5% 감액), 2017년(금투 면제, 생보 5% 감액), 2018년(금투 80% 감액, 생보 6% 감액), 2019년(금투 면제, 생보 16% 감액), 2020년(금투 49% 감액, 생보 64% 감액), 2021년(생보 70% 감액), 2022년(생보 70% 감액)예금보험료 감면 조치

2002년까지 수납한 예금보험료는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현행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부터 수납한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다.

한편, 2011년 3월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였다. 특별계정은 각 금융업권별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예금보험료의 45%(다만, 상호저축은행업권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와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 채권 발행, 외부 차입금, 회수자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공사는 특별계정을 포함하여 2022년 중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총 2조 2,09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수납하였다.

## 나.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2016년 6월 이전에는 부보금융회사가 영업 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 「예금자보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출연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러나 2016년 6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또는 최저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출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 때 최저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에 납부해야한다.

2002년까지 수납한 출연금은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귀속되었고, 2003년부터 수납한 출연금은 현행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

&lt;표 VII-8&gt; 부보금융회사 출연금

(단위 : 억원)

연도	은행	금융투자	생보	손보	종합금융	저축은행	특별계정	합계 <sup>2)</sup>
2003 <sup>1)</sup>	0.3	-	6.5	2.0	-	-	-	8.8
2004	3.4	2.0	6.0	2.0	-	-	-	13.4
2005	2.2	2.0	-	-	-	12.5	-	16.7
2006	3.8	8.0	-	2.0	-	13.4	-	27.2
2007	-	-	-	-	-	-	-	-
2008	1.6	110.1	-	-	-	5.6	-	117.2
2009	7.7	43.1	4.2	3.4	0.2	7.8	-	66.3
2010	0.8	5.8	9.0	0.3	-	-	-	15.9
2011	0.3	-	-	-	-	12.0	-	12.3
2012	5.8	1.3	50.0	8.0	-	24.0	-	89.1
2013	0.8	21.7	3.2	3.1	0.0	49.8	-	78.6
2014	-	0.6	-	-	-	90.6	-	91.2
2015	-	-	-	-	-	-	-	-
2016	8.8	5.3	-	6.0	-	-	-	20.1
2017	20.3	0.6	-	0.3	-	-	-	21.2
2018	-	2.9	3.0	-	-	-	-	5.9
2019	-	-	-	-	-	-	-	-
2020	-	△3	-	2	-	-	-	△1
2021	3	2	-	-	-	-	-	5
2022	-	0.1	-	2	-	-	-	2
합계	58	203	82	31	0	216	-	590

주 : 1) 2002년까지의 출연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0년 1월 1일자로 신협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 다. 예금보험기금채권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 및 제26조의2에 따라 2011년 12월 정부보증 없이 공사 자체 신용으로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을 최초로 발행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하여 특별계정채권을 발행하였다. 2014년 이후에는 만기도래 특별계정채권의 상환(차환)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지원자금 회수 및 예금보험료 등으로 채권 잔액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2022년 중에는 2조 7,000억원의 특별계정채권을 상환하고, 1조 3,900억원을 차환발행하여, 2022년말 기준 특별계정채권 발행 잔액은 6조 2,300억원이다.

한편, 공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투자자 관심도 제고를 통한 안정적 기금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 3월 특별계정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채권 부합 여부에 대한 외부 인증 획득에 성공하였으며, 2020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총 4조 1,700억원의 사회적 채권을 발행하였다.

**<표 VII-9>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채권 발행 및 상환**

(단위: 억원)

연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액
2011	12,000	-	12,000
2012	200,400	-	212,400
2013	20,900	-	233,300
2014	-	12,000	221,300
2015	56,400	98,800	178,900
2016	26,300	42,200	163,000
2017	37,300	72,900	127,400
2018	14,500	26,500	115,400
2019	11,400	26,300	100,500
2020	22,300	34,200	88,600
2021	11,500	24,700	75,400
2022	13,900	27,000	62,300
합계	426,900	364,600	62,300

또한, 공사는 조달수단 다변화 및 조달비용 절감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 및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17년 7월에 전자단기사채를 최초로 발행하였다. 일시적 자금수지 불일치 시 활용중인 부보금융회사 차입금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22년 중에 1조 5,300억원의 단기사채를 발행하고 연말까지 1조 5,330억원을 상환하였다.

<표 VII-10> 단기사채 발행 및 상환

(단위 : 억원)

연도	발행금액	상환금액	잔액
2017	7,500	7,500	-
2018	14,800	14,800	-
2019	33,400	33,400	-
2020	37,300	37,300	-
2021	32,830	32,800	30
2022	15,300	15,330	-
합계	141,130	141,130	-

## 라. 차입금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금보험금 등의 지급 및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한국은행, 부보금융회사, 기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특별계정 설치 이전에는 공사는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부보금융회사로부터 2003년과 2004년에 1,664억원을 차입하였고,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2007년에 2,314억원을 차입하였다.

이 중 신용협동조합계정의 외부 차입금은 파산배당 등 자체 회수자금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920억원을 상환한 후 2010년 1월 1일 신흥중앙회로 잔액을 모두 이관하여 상환하여야 할 외부 차입금이 없고, 저축은행계정의 외부차입금도 2008년 중 2,314억원 전액을 상환하였다.

<표 VII-11> 예금보험기금 차입 및 상환

(단위: 억원)

계정별	연도	차입금액 <sup>1)</sup>				상환금액	잔액
		부보금융회사	한국은행 등	정 부	소 계		
저축 은행	2007	2,314	-	-	2,314	-	2,314
	2008	-	-	-	-	2,314	-
	소계	2,314	-	-	2,314	2,314	-
특별 계정	2011	104,199	-	-	104,199	12,000	92,199
	2012	141,932	-	1,000	142,932	222,625	12,506
	2013	19,365	-	1,000	20,365	30,871	2,000
	2014	960	-	500	1,460	960	2,500
	2015	67,339	-	-	67,339	67,339	2,500
	2016	22,988	-	-	22,988	22,988	2,500
	2017	42,707	-	-	42,707	39,907	5,300
	2018	16,376	-	-	16,376	19,176	2,500
	2019	11,877	-	-	11,877	11,877	2,500
	2020	12,744	-	-	12,744	12,744	2,500
	2021	9,898	-	-	9,898	9,752	2,646
	2022	9,993	-	-	9,993	10,139	2,500
	소계	460,378	-	2,500	462,878	460,378	2,500
합 계		462,692	-	2,500	465,192	462,692	2,500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협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한편, 2011년 대규모 부실저축은행 정리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계정은 은행 등 부보금융회사로부터 2022년말까지 총 46조 378억원을 차입하였다. 또한, 특별계정 재원 확충의 일환으로 2012년 이후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 무이자(10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총 2,500억원 융자받았다.

2022년말까지 특별계정 차입금 46조 2,878억원 중 지원자금회수 및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46조 378억원을 상환하여 2022년말 차입금 잔액은 2,500억원이다.

## 2. 기금 지원

### 가. 개요

예금보험기금은 2003년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을 위한 출자·출연·대출 등의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지출한다. 2010년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김천저축은행 등 16개 부실저축은행에 저축은행계정을 통해 총 4조 5,27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에는 특별계정을 통해 총 27조 1,717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에 1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보험계정을 통해 226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VII-12>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누계)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계정별	출자	출연	예금보험금 지급	대출	개산지급금	합계 <sup>1)</sup>
은행	-	-	-	-	-	-
금융투자	-	-	-	-	-	-
보험	-	226	-	-	-	226
종합금융	-	-	-	-	-	-
저축은행	1,211	24,542	14,412	4,891	219	45,275
특별계정	3,655	229,873	36,278	1,136	775	271,717
합계	4,866	254,641	50,690	6,027	994	317,219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협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 나. 금융권역별 지원내역

#### (1) 은행

2022년 중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은행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 (2) 금융투자회사

2022년 중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투자회사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 (3) 보험회사

2022년 중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보험회사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다.

### (4) 저축은행(특별계정)

공사는 2011년부터 영업정지된 31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하여 특별계정을 통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 이전이 확정된 부실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순자산부족분 출연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부실자산을 케이알앤씨(KR&C)로 계약 이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었다.

2022년 중 공사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보험회사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또는 출자, 출연,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으며, 영업정지기준 연도별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및 예금보험금 지급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VII-13> 특별계정을 통한 예금보험금 지급 및 자금 지원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보험금 지급 (가지급금 포함)	출연, 대출 등	합 계
삼화 등 16개 저축은행	2011년	32,796	127,034	159,830
솔로몬 등 8개 저축은행	2012년	3,453	86,706	90,159
서울 등 5개 저축은행	2013년	29	18,185	18,214
해솔저축은행	2014년	-	2,994	2,994
골든브릿지저축은행	2015년	-	520	520
합 계		36,278	235,439	271,717

## 3. 지원자금 회수

### 가. 개요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지원한 자금도 상환기금의 회수방법과 마찬가지로 출자부보금융회사의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회수, 부실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따른 파산배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자금 상환 등의 회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2022년에 저축은행계정은 19억원, 특별계정은 2,657억원을 회수하였고, 2003년부터 2022년말까지 누적으로 총 15조 5,775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VII-14> 예금보험기금의 회수(2022년 및 누계)**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출자금회수	출연금회수	보험금회수	대출금회수 <sup>1)</sup>	개산지급금 회수	합 계 <sup>2)</sup>
2022년	손해보험	-	-	-	-	-	0
	저축은행	-	7	8	4	-	19
	특별계정	-	2,509	147	1	-	2,657
	합 계	-	2,516	155	5	-	2,676
2003~2022년말 누계		5,948	118,532	24,167	6,134	994	155,775

주 : 1) 케이알앤씨(KR&C)를 통한 대출원금 및 이자의 회수

2) 2010년 1월 1일 신탁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 나.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2022년 중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한 파산재단의 보유자산 처분 등을 통하여 저축은행 파산재단 등으로부터 2,671억원의 파산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누계실적으로 총 14조 6,134억원을 회수하였고,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케이알앤씨(KR&C) 등을 통해 부실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하여 6,027억원을 대출하여 총 6,134억원을 회수하였다.

**<표 VII-15> 파산배당금 및 대출금 회수**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파산배당금 회수액		대출금 회수액	
	2022년 중	2003~2022년말 누계	2022년 중	2003~2022년말 누계
손해보험	-	147	-	-
저축은행 (특별계정 포함)	2,671	143,546	4	6,134
합 계	2,671	143,693	4	6,134

## 제3절 결산

### 1. 결산 개요

공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3(구분 회계처리)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 공사회계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상환기금'이라 한다) 등 4개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다만, 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의 위임을 받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구분회계 사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통합 결산서를 작성한다.

예금보험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다시 은행계정,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계정, 생명보험회사계정, 손해보험회사계정, 종합금융회사계정, 상호저축은행계정,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등 7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상환기금은 은행계정,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계정, 생명보험회사계정, 손해보험회사계정, 종합금융회사계정, 상호저축은행계정, 신용협동조합계정 등 7개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공사는 회계자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2회계연도부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에는 예일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수검하였고 감사의견은 “적정”이었다.

### 2. 결산 기준

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의 재무제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고, 상환기금의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작성되었다

## 【결산 기준】

### 1. 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

#### 1.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관계기업투자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 유가증권의 평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 및 매도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다.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 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 취득원가와 만기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한다. 관계기업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에 대한 지분비율만큼 취득원가에 가감처리하고 동시에 자본항목을 증감시키거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과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 손상된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원가(또는 상각 후 취득원가)와 공정가액(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 나. 대출금 등의 평가

대출금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 다. 총당부채

소송결과 등에 따라 공사가 부담해야 할 손실예상액을 추정하여 총당부채를 적립하고 있다.

##### 라.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예금보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의 매입자금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자본예산전출금)의 과목을 감소시키고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 2. 수익·비용의 회계처리

### 가. 수익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은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계상하였다. 예금보험료수입과 예금 등과 관련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며,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 나. 수익·비용의 기간귀속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손익을 계상하였다.

- (1) (비용의 이연) 당해 연도 이후에 속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표시하고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였다.
- (2) (비용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비용으로 결산일 현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미지급비용으로 표시하여 비용에 가산하였고, 결산일 현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계상하지 않았다.
- (3) (수익의 계상) 당해 연도에 속하는 수익으로 일정한 계약 또는 약관에 정한 기일이 미도래하여 결산일 현재 현금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미수수익으로 표시하여 수익에 가산하였다.

## II. 상환기금

### 1. 국가회계기준의 적용

상환기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 2. 자산·부채의 회계처리

#### 가.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

##### (1)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분류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한다.

##### (2) 유가증권의 평가

채무증권은 상각 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과 기타장기투자증권 및 기타 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기투자증권 또는 단기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변동표에 조정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한편,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감액한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다.

#### 나. 대여금 등의 평가

대여금, 미수채권 및 구상채권 등에 대하여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파산재단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재단 보유자산 평가에 근거하여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 다. 장기충당부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금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손실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 라. 공채발행차금

상환기금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할인발행차금 또는 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공채 발행 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환입)하고, 동 상각(환입)액을 이자비용에 가산(차감)하여 처리하고 있다.

#### 마. 자본예산전출금 및 공사운영비

상환기금은 공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과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바, 공사회계의 자본적 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동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이 감가상각 등에 의하여 감소할 경우 동 과목을 감소시키고 관리운영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등 공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에 배분된 금액은 프로그램총원가로 그 이외의 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하고 있다.

### 3. 수익·비용의 회계처리

#### 가. 수익인식기준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교환수익의 경우 수익창출 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 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되, 회수불가능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현금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 나. 비용인식기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 3. 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 통합 결산 현황

#### 가. 재무 현황

2022년말 현재 자산 총액은 17조 7,638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1조 3,107억원(8.0%) 증가하였다. 이는 운용자산, 미수보험료 및 장기구상채권이 각 1조 353억원, 1,860억원, 535억원 순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2년말 현재 부채 총액은 6조 5,584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1조 3,292억원(△16.9%) 감소하였다. 이는 보험료, 파산재단에서 받은 파산배당금 등의 수입으로 특별계정 발행채권 및 차입금을 순상환(1조 3,275억원)한 데 기인한다.

2022년말 현재 자본 총액은 11조 2,099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2조 6,399억원(30.8%) 증가하였다. 이는 당기 순이익(2조 6,752억원)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한다.

#### 나. 손익 현황

2022년도 당기순이익은 2조 6,752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2021년 대비 3,899억원(17.1%) 증가하였다.

영업이익은 2조 3,577억원으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영업수익(2조 6,164억원)의 경우 예금보험료수익(2조 3,153억원), 운용자산 이자수익(2,876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영업비용(2,587억원)의 경우 예특채·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1,354억원), 공사운영비(1,112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기타손익은 3,201억원으로 구상채권 회수예상가액 증가로 인한 대손충당금순환입(3,201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lt;표 VII-16&gt; 요약 재무상태표

당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전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자본	금 액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b>유동자산</b>	<b>130,054</b>	<b>110,192</b>	<b>유동부채</b>	<b>26,351</b>	<b>27,779</b>
1. 현금및현금성자산	171	236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97	549
2. 유동금융자산	114,584	96,521	단기미지급비용	518	473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리스부채등	79	76
측정금융자산	2,997	621	2. 유동금융부채	25,717	27,18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단기차입금	21	186
측정금융자산(채권)	39,881	18,822	유동성장기차입금	200	-
단기대여금	628	628	(현재가치할인차금)	(-18)	-
(대손충당금)	-	-	정부보조금이연수익	14	-
단기금융상품	71,078	76,450	사채	25,500	27,0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297	13,434	사채할증(인)발행차금	-	1
착오송금채권	11	9	3. 유동비금융부채	11	18
단기미수익	15,283	13,423	단기예수금	11	18
기타	3	2	4. 유동총당부채	26	25
4. 유동비금융자산	2	1	유동종업원급여충당부채	26	25
단기선급비용등	2	1			
<b>비유동자산</b>	<b>47,629</b>	<b>54,384</b>	<b>비유동부채</b>	<b>39,233</b>	<b>51,097</b>
1. 비유동금융자산	38,017	45,662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09	16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36,502	43,072	금융리스부채	109	167
측정금융자산(채권)	36,502	43,072	2. 비유동금융부채	39,050	50,856
장기대여금	6	6	장기차입금	2,300	2,500
장기금융상품	1,509	2,584	(현재가치할인차금)	(-244)	(-336)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08	102	정부보조금이연수익	207	290
장기보증금	117	111	사채	36,800	48,400
(현재가치할인차금)	(-9)	(-9)	사채할증(인)발행차금	(-13)	2
3. 유형자산	627	414	3. 비유동비금융부채	74	74
토지	52	52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	74	74
건물	139	102			
건축물	18	18	<b>부채 합계</b>	<b>65,584</b>	<b>78,876</b>
건설중인자산	254	14	<b>이익잉여금</b>	<b>113,086</b>	<b>86,219</b>
사용권자산	309	313	당기순이익:(+)26,752		
기타유형자산	277	277	기타잉여금변동:(+)115		
(감가상각누계액)	(-422)	(-362)	기타잉여금변동:(+)115		
4. 영업권외무형자산	6	6	<b>기타자본구성요소</b>	<b>(-987)</b>	<b>(-519)</b>
기타무형자산	6	6	기타포괄손익변동:(-)468	(-987)	(-519)
5. 순확정급여자산	226	90	<b>자본 합계</b>	<b>112,099</b>	<b>85,700</b>
6. 비유동비금융자산	8,645	8,110	<b>부채 및 자본 합계</b>	<b>177,683</b>	<b>164,576</b>
장기선급비용	8	7			
장기구상채권	142,332	144,999			
(대손충당금)	(-133,695)	(-136,896)			
<b>자산 합계</b>	<b>177,683</b>	<b>164,576</b>			

<표 VII-17>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 지원계정 및 공사회계 통합)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b>영업이익 (A=B-C)</b>	<b>23,577</b>	<b>21,023</b>
<b>영업수익 (B)</b>	<b>26,164</b>	<b>23,827</b>
보험료수익	23,153	22,001
이자수익	2,876	1,694
이전수입	71	73
착오송금수입	2	1
기타수입	62	58
<b>영업비용 (C)</b>	<b>2,587</b>	<b>2,804</b>
이자비용	1,354	1,568
인건비	835	814
경비	397	421.8
착오송금비용	1	0.2
<b>기타 손익 (D)</b>	<b>3,201</b>	<b>1,829</b>
대손상각비 순환입	3,201	1,814
기타	-	15
<b>금융 손익 (E)</b>	<b>(-)26</b>	<b>1</b>
금융자산처분이익 등	(-)26	1
<b>당기순이익 (F=A+D+E)</b>	<b>26,752</b>	<b>22,853</b>
<b>기타포괄손익 (G)</b>	<b>(-)354</b>	<b>(-)584</b>
<b>총포괄이익 (H=F+G)</b>	<b>26,398</b>	<b>22,269</b>

## 4. 상환기금 결산 현황

### 가. 재무 현황

2022년말 현재 자산 총액은 3조 3,706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2,207억원(7.0%)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자산 9,298억원 증가\* 및 장기투자증권 6,948억원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 예치금 증가(7,799억원), 유동성장기국채(772억원) 및 단기운용채권 증가(487억원) 등  
 \*\* 우리금융지주 매각(△4,173억원) 및 장기국채 유동성 분류(△772억원) 등

2022년말 현재 부채 총액은 0원으로 2021년말 대비 24억원(100.0%) 감소하였다. 이는 소송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총당부채 감소에 기인한다.

2022년말 현재 순자산 총액은 3조 3,706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2,232억원 증가하였다. 이는 공적자금상환 기금으로 2조 4,000억원을 전출함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을 2조 7,758억원 시현한 데 주로 기인한다.

### 나. 손익 현황

2022년 중 재정운영결과\*는 (-)2조 7,758억원으로 2021년도 대비 1,096억원(4.1%) 증가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의 당기순이익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부(-)인 경우 발생한 원가보다 수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부(-)의 금액이 순이익)

상환기금의 고유사업인 금융정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3,597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총원가 2,540억원에서 프로그램수익 6,137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프로그램총원가의 경우 지원자산 처분손실(2,382억원), 대손상각비(150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수익은 지원자산처분이익(3,253억원), 배당금수익(2,481억원), KR&C 대출금 이자수익(39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운영순원가는 (-)3,985억원으로,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3,597억원에서 관리운영비 등 33억원을 가산하고 비배분수익 421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원가로 배부되지 않은 경비 등의 관리업무비를 말하며, 비배분수익은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 없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말한다.

한편, 재정운영결과 (-)2조 7,758억원은 재정운영순원가 (-)3,985억원에서 비교환수익 2조 3,773억원을 차감한 결과이다. 여기서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특별기여금수익을 말한다.

<표 VII-18> 요약 재정상태표

당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전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단위 : 억원)

자 산	금 액		부채 및 순자산	금 액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b>유동자산</b>	<b>20,442</b>	<b>11,144</b>	<b>유동부채</b>	-	1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324	11,131	1. 기타유동부채	-	1
2. 단기금융상품	18,607	-			
3. 단기투자증권	1,259	-			
4. 미수채권	11,280	11,041	<b>장기총당부채</b>	-	24
(대손충당금)	(-)11,028	(-)11,028	1. 소송충당부채	-	24
<b>투자자산</b>	<b>13,190</b>	<b>20,281</b>	<b>부채 합계</b>	-	25
1. 장기대여금	142,815	142,815			
(대손충당금)	(-)140,132	(-)139,989	<b>순자산</b>		
2. 장기투자증권	10,507	17,455	1. 기본순자산	523,064	523,064
<b>기타비유동자산</b>	<b>74</b>	<b>74</b>	2. 적립금및잉여금	(-)487,677	(-)491,434
1. 기타비유동자산	74	74	3. 순자산조정	(-)1,681	(-)156
(대손충당금)	-	-	<b>순자산 합계</b>	<b>33,706</b>	<b>31,474</b>
<b>자산 합계</b>	<b>33,706</b>	<b>31,499</b>	<b>부채와 순자산 합계</b>	<b>33,706</b>	<b>31,499</b>

**<표 VII-19> 요약 재정운영표**

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단위 : 억원)

구 분	당 기			전 기		
	총원가	수익	순원가	총원가	수익	순원가
<b>I. 프로그램순원가</b>	2,540	(-)6,137	(-)3,597	3,485	(-)8,327	(-)4,842
1. 금융정책지원	2,540	(-)6,137	(-)3,597	3,485	(-)8,327	(-)4,842
이자비용	-			119		
대손상각비	150			321		
지원자산처분손실	2,382			3,001		
지급수수료 등	8			44		
배당금수익		2,481			1,627	
정부외용자금이자수익		396			476	
지원자산처분이익		3,253			6,205	
대손충당금환입		7			19	
잡이익 등		-			-	
<b>II. 관리운영비</b>			33			32
1. 지급수수료			33			32
<b>III. 비배분비용</b>			-			-
1. 평가손실 등			-			-
<b>IV. 비배분수익</b>			421			80
1. 이자수익			421			80
<b>V. 재정운영순원가 ( I + II + III - IV )</b>			(-)3,985			(-)4,890
<b>VI. 비교환수익</b>			23,773			21,772
1. 부담금수익			23,773			21,772
<b>VII. 재정운영결과(V-VI)</b>			(-)27,758			(-)26,662





# 부 록

- 1. 예금보험제도 개요
- 2. 통계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1. 예금보험제도 개요

## 가. 예금보험제도 의의

예금보험제도는 평상시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적시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 등을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 예금보험의 구조 >



## 나. 부보금융회사

부보금융회사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회사로서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금융회사 포함),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금융업을 영위하는 개별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예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일반은행뿐만 아니라,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 등이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은행 등도 이에 해당한다.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가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한다. 한편,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회사가 해당한다.

## 다. 부보예금

부보예금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부보금융회사 예금상품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 보호되지 않는 예금 등을 제외한 금전을 말한다.

### <보호 금융상품 및 비보호 금융상품 현황>

(2022년 12월말 기준)

구분	보호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li> <li>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li> <li>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li> <li>외화예금</li> <li>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li> <li>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li> <li>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li> <li>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li> <li>은행 발행채권</li> <li>주택청약저축<sup>1)</sup>, 주택청약종합저축 등<sup>1)</sup></li> <li>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li> <li>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li> <li>개발신탁</li> </ul>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li> <li>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li> <li>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li> <li>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li> <li>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li> <li>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li> <li>환매조건부채권(RP)</li> <li>금현물거래예탁금 등</li> <li>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li> <li>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주식워런트증권(ELW)</li> <li>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li> <li>증권사 발행채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8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li> <li>「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금전</li> </ul>

구분	보호 금융상품	비보호 금융상품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li> <li>• 퇴직보험</li> <li>• 변액보험계약 특약</li> <li>•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중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li> <li>•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li> <li>•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li> <li>•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li> <li>•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li> <li>•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중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li> <li>•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li> </ul>
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 발행채권 등</li> </ul>
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li> <li>•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sup>2)</sup></li> <li>•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sup>2)</sup></li> <li>•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등</li> <li>•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li> </ul>

주 : 1)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주택도시기금법 제14조 제2항)  
 2) 저축은행이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포함),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 예금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 라. 보호한도

1996년 공사 출범 당시 예금자 1인당 보호한도는 2,000만원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되고 경제 전체의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997년 11월 19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한도를 원리금 전액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금융구조조정과 진전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한편, 원리금 전액 보장으로 인한 예금자와 부보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됨에 따라 1998년 7월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금보험금 계산방식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원금(또는 납입보험료)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원금(또는 납입보험료)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원금만 보호하는 것이었다.

\*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 이율(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과 영업 정지된 부보금융회사의 약정이자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된 이자

2001년부터 환원 예정이었던 예금부분보호제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호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보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공사는 2009년 6월 이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DC)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적립금 중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은행 예금, 금리 연동형·이율보증형 보험상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 등을 보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금자가 보호대상 적립금 등이 예치된 부보금융회사에 다른 부보예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보호대상 적립금 등과 기타 부보예금을 합산하여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예금보호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사는 2015년 2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보호대상 적립금 등과 기타 부보예금에 대하여 각각 5,000만원의 예금 보호한도를 별도 적용하고 있다.

#### <예금보호한도 변천내역>

구 분	예금보험한도
1997. 1. 1 ~ 1997. 11. 18	1인당 2,000만원 보호
1997. 11. 19 ~ 1998. 7. 31	원리금 전액 보호
1998. 8. 1 ~ 2000. 12. 31	1998. 8. 1 이전 가입분 : 전액 보호 1998. 8. 1 이후 가입분 : • 2,000만원 초과 시 원금만 전액 보호 • 2,000만원 이하 시 원금만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000만원까지 보호
2001. 1. 1 ~ 2015. 2. 25	1인당 5,000만원 보호(결제성 예금은 2003. 12. 31 까지 전액 보호)
2015. 2. 26 ~ 현재	1인당 5,000만원 보호(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은 별도로 5,000만원 보호)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 포함

## 2. 통계

### 가. 부보금융회사<sup>1)</sup>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개)

구 분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은 행	56	54	54	54	54
국 내	18	18	18	19	19
외국계	38	36	36	35	35
금융투자 <sup>2)</sup>	124	141	105	106	107
보 험	44	45	45	43	45
생명보험	24	24	24	23	23
손해보험	20	21	21	20	22
종합금융	1	1	1	1	1
저축은행 <sup>3)</sup>	80	80	80	80	80
합 계	305	321	285	284	287

- 주 : 1) 부보금융회사는 인·허가일부터 인·허가 취소일 또는 해·파산일 전일까지 금융회사를 말함  
 2)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포함하여 집계

### 나. 금융권역별 부보예금<sup>1)</sup>

(2022년 9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21년말(A)	2022년 9월말(B)	증감(B-A)
은 행	17,164,814	17,967,935	803,121
금융투자	814,210	630,054	△184,156
보 험	8,653,101	8,769,894	116,793
생명보험	6,429,911	6,486,696	56,785
손해보험	2,223,191	2,283,198	60,007
종합금융	24,592	30,377	5,785
저축은행	885,340	1,034,320	148,980
합 계	27,542,057	28,432,581	890,524

- 주 : 1) 부보예금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에 따라 보호되는 부보금융회사 예금상품 중 동법 시행 제3조에 규정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 등을 제외한 금액(잔액기준)

## 다. 상환기금 수입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상환기금 설치 전 보험료 수입 <sup>2)</sup>			상환기금 특별기여금 수입								
	1998 이전 <sup>1)</sup>	1999 ~ 2002	합 계	2003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은 행	1,613	13,105	14,718	87,024	10,664	11,344	12,011	12,566	14,100	15,681	17,084	180,473
금융투자	-	687	687	2,379	240	272	300	307	305	538	755	5,095
보 험	2,322	8,237	10,559	26,070	3,836	4,171	4,330	4,509	4,745	4,885	5,103	57,648
생명보험	1,800	6,646	8,446	20,398	2,835	3,067	3,133	3,228	3,384	3,436	3,584	43,066
손해보험	522	1,591	2,113	5,672	1,001	1,103	1,197	1,281	1,361	1,449	1,519	14,582
종합금융	980	838	1,818	126	8	10	11	12	14	17	22	221
저축은행	2,407	1,833	4,240	5,668	348	403	469	539	585	651	786	9,448
신 협	402	1,491	1,893	1,986	299	332	-	-	-	-	-	2,617
합 계	7,724	26,191	33,915	123,255	19,231	16,531	17,121	17,933	19,748	21,772	23,750	255,502

주 : 1) 1998년 보험료 수입은 1998년초 예금보험기금 통합에 따라 해체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제외한 관련 기금을 1998년 4월 1일 보험 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받은 기금을 포함  
2) 2002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 라. 예금보험료 수입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12 <sup>1)</sup>	2013 <sup>4)</sup>	2014 <sup>4)</sup>	2015 <sup>4)</sup>	2016 <sup>4)</sup>	2017 <sup>4)</sup>	2018 <sup>4)</sup>	2019 <sup>4)</sup>	2020 <sup>4)</sup>	2021 <sup>4)</sup>	2022 <sup>4)</sup>	합 계
은 행	48,711	3,948	4,197	4,369	4,675	5,005	5,250	5,342	5,942	6,641	6,946	101,025
금융투자	2,657	0	0	0	0	0	0	39	0	165	456	3,318
보 험	35,189	709	1,256	1,990	2,662	3,233	3,439	3,444	3,139	2,008	1,985	59,054
생명보험	28,525	221	811	1,280	1,857	2,349	2,466	2,426	2,109	914	826	43,784
손해보험	6,664	488	445	710	806	883	973	1,018	1,030	1,093	1,159	15,269
종합금융	259	8	6	4	7	9	9	10	11	14	18	355
저축은행	14,276	253	256	64	296	286	139	248	216	253	211	16,498
특별계정 <sup>3)</sup>	7,558	6,672	6,158	7,120	6,823	8,242	9,102	9,360	10,259	11,267	12,473	95,036
합 계 <sup>3)</sup>	108,649	11,590	11,872	13,547	14,463	16,774	17,940	18,443	19,567	20,347	22,090	275,284

주 : 1) 2002년까지의 예금보험료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환기금으로 이전  
2) 2011년 4월 상호저축은행구조조정특별계정 설치(2026년말까지 준치 예정)  
3) 2010년 1월 1일자로 신협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4) 목표기금제도에 따라 2012년(금투·생보 면제, 손보 15% 감액), 2013년(금투 면제, 생보 45% 감액, 손보 7% 감액), 2014년(금투 면제, 생보 38% 감액, 손보 1% 감액), 2015년(금투 면제, 생보 17% 감액), 2016년(금투 면제, 생보 5% 감액), 2017년(금투 면제, 생보 5% 감액), 2018년(금투 80% 감액, 생보 6% 감액), 2019년(금투 면제, 생보 16% 감액), 2020년(금투 49% 감액, 생보 64% 감액), 2021년(생보 70% 감액), 2022년(생보 70% 감액) 예금보험료 감면 조치

## 다. 예금보험기금채권 발행 실적(2002년 구 발행 예보채권)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합 계
은 행	120,650	158,591	60,307	77,617	36,600	453,765
금융 투자	160	3	-	32,185	-	32,348
보 험	11,534	42,100	10,000	92,089	-	155,723
생명보험	11,534	41,422	-	24,120	-	77,076
손해보험	-	678	10,000	67,969	-	78,647
종합 금융	65,120	-	12,600	73,344	-	151,064
저 축은 행	9,917	15,977	6,500	33,331	-	65,725
신 협	2,769	8,178	-	2,027	-	12,974
합 계	210,150	224,849	89,407	310,593	36,600	871,599 <sup>1)</sup>

주 : 1) 차환발행을 포함한 총 발행 누적액

## 바. 상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출 자	출 연	예금보험금지급 <sup>1)</sup>	자산매입 <sup>1)</sup>	대 출	합 계
은 행	222,039	139,189	-	81,064	-	442,292
금융 투자	99,769	4,143	113	21,239	-	125,264
보 험	159,198	31,192	-	3,495	-	193,885
생명보험	56,697	27,519	-	3,495	-	87,711
손해보험	102,501	3,673	-	-	-	106,174
종합 금융	26,931	7,431	182,718	-	-	217,080
저 축은 행	1	4,161	72,892	-	5,969	83,023
신 협	-	-	47,402	-	-	47,402
합 계	507,937	186,117	303,124	105,799	5,969	1,108,946

주 : 1) 정리금융회사를 통한 지원 포함

## 사. 상환기금 자금지원 세부 내역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지원금액	구 분		지원금액
출 자	서울은행	46,809	출 연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5개 인수은행)	97,113
	제일은행	50,248		한빛, 경남, 광주, 평화, 서울, 제주은행	29,677
	한빛은행	60,286		농협	870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1,923		삼성, 흥국, 교보, 제일생명(4개 인수보험사)	11,641
	하나은행(하나보람합병)	3,295		제일은행	11,528
	조흥은행	27,179		대한, 현대, 금호, 동양, SK생명보험	14,220
	평화은행	4,930		부민금고 등	4,161
	경남은행	2,590		대한화재	509
	광주은행	1,704		우리(구 하나로)증권	7,431
	제주은행	531		국제화재	739
	수협	11,581		동양, 삼성, 현대, LG, 동부화재	2,425
	농협	962		녹십자(대신)생명	1,393
	한아름종합금융회사	300		KB(한일)생명	266
	하나로증권	24,912		한국투자신탁증권	784
	한스, 한국, 중앙증권	2		대한투자신탁증권	630
	영남증권	1,717		현대투자신탁증권	2,730
	한아름상호신용금고	1		소 계	186,117
	서울보증보험	102,500			
	대한생명보험	35,500			
	국민, 태평양, 두원, 동아, 한덕, 조선생명보험	21,197			
	한국투자신탁증권	51,649			
	대한투자신탁증권	29,003			
	정리금융공사	1			
대한, 국제화재보험	1				
현대투자신탁증권	19,116				
소 계	507,937				

구 분			지원금액
예금 보험금 지급	직접지급	신용협동조합	47,402
		증권회사(4개)	113
		상호신용금고	12,335
		영남, 한솔, 한국증권	1
	정리금융회사 대출을 통한 지급	한아름종합금융(종금 18개)	182,717
		한아름상호신용금고(금고 59개)	60,557
소 계		303,124	
자산 매입	직접매입	제일은행(신주인수권부사채)	249
		제일은행(베트남, 뉴욕현지법인지분)	165
		현대투자신탁증권(현대오토넷주식등)	8,570
	정리금융공사 대출을 통한 매입	국민 등 5개 인수은행	1,588
		제일은행	79,063
		동아, 국민, 태평양, 대한, SK생명보험	3,495
		한국투자신탁증권	4,830
		대한투자신탁증권	6,539
		현대투자신탁증권	1,300
		소 계	105,799
대 출	상호신용금고(13개)	5,969	
	소 계	5,969	
총 계		1,108,946	

## 아. 예금보험기금 자금지원 총괄표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출자	출연	예금보험기금지급	대 출	개산지급금	합 계 <sup>1)</sup>
은 행	-	-	-	-	-	-
금 용 투 자	-	-	-	-	-	-
보 험	-	226	-	-	-	226
생명보험	-	-	-	-	-	-
손해보험	-	226	-	-	-	226
종 합 금 용	-	-	-	-	-	-
저 축 은 행	1,211	24,542	14,412	4,891	219	45,275
특 별 계 정	3,655	229,873	36,277	1,136	775	271,717
합 계	4,866	254,642	50,690	6,027	994	317,218

주 : 1) 2010년 1월 1일 신협중앙회로 이관된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은 제외

## 자. 연도별 상환기금 지원자금 회수 실적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연 도	금 액
2000 이전	103,457
2001	41,179
2002	26,634
2003	56,034
2004	56,672
2005	36,117
2006	34,001
2007	43,660
2008	23,980
2009	24,118
2010	29,295
2011	12,679
2012	13,769
2013	7,992
2014	24,449
2015	16,243
2016	26,483
2017	11,692
2018	5,040
2019	4,652
2020	3,318
2021	12,923
2022	8,467
누 계 <sup>1)</sup>	622,855

주: 1) 현투증권 등 부실금융회사 대주주 책임부담금 2,351억원(2004년도), 458억원(2006년도), 93억원(2007년도), 200억원(2012년도) 포함

## 차. 형태별 상환기금 지원자금 회수 실적

(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출자금 회수	출연금정산 등	파산배당금 <sup>1)</sup>	자산매각 <sup>1)</sup>	대출금 직접회수	합 계
은 행	236,496	702	18,472	67,063	-	322,733
금융 투자	12,121	3,375	78	18,015	-	33,589
보 험	68,823	888	4,310	2,453	-	76,474
생명보험	25,338	848	3,662	2,453	-	32,302
손해보험	43,485	40	648	-	-	44,172
종합 금융	3,305	59	93,391	-	-	96,755
저축은행	-	343	52,760	-	5,969	59,072
신 협	-	4	34,229	-	-	34,233
합 계	320,745	5,371	203,240	87,531	5,969	622,855

주 : 1) 정리금융회사를 통한 회수 포함

## 카. 금융구조조정 추진 실적

(2022년말 기준, 단위: 개, %)

금융권역별	1997년말 총기관수 (A)	구조조정 현황					신설 등	현 재 기관수
		인가 취소	합 병	해산·파산, 영업이전등	계 (B)	비중 (B/A)		
은행	33	5	12	-	17	51.5	4	20
비은행	2,062	205	293	635	1,133	54.9	595	1,524
• 종 금	30	22	8	-	30	100.0	1	1
• 증 권	36	6	14	6	26	72.2	48	58
• 보 험	50	11	10	13	34	68.0	37	53
• 자산운용	24	9	12	3	24	100.0	437	437
• 저축은행	231	144	38	1	183	79.2	31	79
• 신 협	1,666	3	196	612	811	48.7	15	870
• 리 스	25	10	15	-	25	100.0	26	26
합 계	2,095	210	305	635	1,150	54.8	599	1,544

자료 : 금융위원회

## 다. 공적자금 지원 실적

(1997년 11월 ~ 2022년말, 단위 : 조원)

구 분	출자	출연	예금 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합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회사 등	-	-	-	-	2.4	2.4	
합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자료 : 금융위원회

## 파.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체결·추가·수정 내역

(2022년 12월말 기준)

금융회사	MOU 체결 (재체결)	MOU 관리목표		MOU 해지
		추가	수정	
수협은행 (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2001. 4. 25 (2016. 12. 1.) <sup>1)</sup>	2005. 3. 23 2007. 3. 28 2009. 3. 30 2011. 3. 30 2012. 3. 29 2013. 4. 24 2014. 3. 25 2015. 3. 25 2016. 3. 25 2017. 3. 22 2018. 3. 28 2019. 4. 24 2020. 3. 25 2021. 6. 9 2022. 3. 22	2003. 2. 12 2003. 7. 9 2005. 12. 21 2007. 12. 26 2010. 3. 23	2022. 9. 30 (국채 납입)

금융회사	MOU 체결 (재체결)	MOU 관리목표		MOU 해지
		추가	수정	
서울보증보험	2000. 4. 12 <sup>2)</sup> (2001. 6. 9)	2005. 6. 22 2007. 7. 18 2009. 6. 10 2011. 6. 8 2012. 6. 12 2013. 6. 26 2014. 3. 25 2015. 3. 25 2016. 3. 25 2017. 3. 22 2018. 3. 28 2019. 4. 24 2020. 3. 25 2021. 4. 21 2022. 3. 22	2002. 7. 10 2006. 6. 21 2007. 12. 26	-
우리은행 (구 한빛은행)	1999. 1.22 <sup>3)</sup> (2000.12.30)	2003. 1. 22 2005. 3. 23 2007. 3. 28 2009. 3. 30 2011. 3. 30 2012. 3. 29 2013. 4. 24 2014. 3. 25 2015. 3. 25 2016. 3. 25	2004. 9. 22 2007. 12. 26 2010. 3. 23	2016.12.16 <sup>3)</sup> (과점주주 매각)
제주은행	2000.12. 30	-	-	2002. 4.29 (신한지주 앞 매각)
서울은행	2000.12. 30	-	2001. 6. 29	2002.12. 1 (하나은행 앞 매각)
조흥은행	1999. 11.12 <sup>2)</sup> (2002. 1. 31)	-	-	2003. 8.19 (신한지주 앞 매각)
대투증권	2000. 9.25 <sup>2)</sup> (2002. 2. 20)	-	-	2005. 5.31 (하나은행 앞 매각)
한투증권	2000. 9.25 <sup>2)</sup> (2002. 2. 20)	-	-	2005. 3.31 (구 동원지주 앞 매각)
대한생명	2000. 4. 12 <sup>2)</sup> (2001. 9. 5)	-	-	2002.12.12 (한화컨소시엄 앞 매각)

금융회사	MOU 체결 (재체결)	MOU 관리목표		MOU 해지
		추가	수정	
우리카드 (구 평화은행)	2000. 6. 7 <sup>2)</sup> (2000.12.30)	-	2002. 3. 25	2004. 3.31 (우리은행과 합병)
우리증권	2000. 12. 9	-	2001. 6. 29	2003. 8. 1 (우리은행과 합병)
우리금융지주	2001. 7. 2	-	2004. 9. 22 2007. 12. 26 2010. 3. 23	2014. 11. 3 (우리은행과 합병)
광주은행	2000. 12. 30	-		2014.10.10 (JB 금융지주 앞 매각)
경남은행	2000. 12. 30	-		2014.10.10 (BS 금융지주 앞 매각)

주 : 1) 수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2016.12.1.수협중앙회에서 분리·신설된 수협은행과 MOU 신규 체결

2) 해당 금융회사, 공사,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 3자간 약정 체결

3) 우리은행의 과점주주 매각이 성사됨에 따라 2016.8.22.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내용 및 MOU 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적 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사-우리은행 간 체결된 MOU 해지

---

예금자보호와 금융안정  
**2022 연차보고서**

---

발행인 유재훈

편집인 임일섭

발행처 예금보험공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 화 02-758-1029

팩 스 02-758-1090

---